

溫平里 古文書 研究

金 智 弘*

第1部

본고에서 다룬 古文書란 대체로 1840년대에서부터 1910년대에 걸친 기간의 문서를 가리킨다. ‘古’라는 관형사가 가리킬 수 있는 범위는 비단 본고에서 다룬 60~70년간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다. 文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는 서기 1세기 전후로 추정되는 (60년 또는 120년) 현존의 新羅 壬申誓記石 까지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古文書는 우선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주체자(發給者)와 또 그와 어떠한 관계를 이룰 대상자(受取者)가 있어야 한다. 이럼으로써 한 문서가 단순히 日記나 備忘錄과 같은 記錄類와 달리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최승희 1981: 6).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들에서는 문서라는 현대적 용어보다 文記 또는 文券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다. 글로 기록된 證券이란 뜻이 당시의 보편적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용어도 수취자를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 고문서들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일정한 시대의 일정한 표현형식을 좇아 쓰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두 특징을 지니면서 韓紙에다 붓으로 쓰여진 것들을 본고에서는 고문서의 대상(狹意)으로 삼는다.¹⁾

*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科 助教

1) ‘書’라는 글자는 원래 隸과 者가 합하여진 글자이다. 이들은 각각 붓(筆)과 드

‘온평리 고문서’라는 명칭은 단지 어느 한 집안에 내려오는 문서들을 가리키는데, 그것들은 주로 ① 호구 단자 및 准戶口, ② 토지 매매 문서, ③ 재산 상속 문서, ④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 토지 매매 문서와 호구 단자는 숫적인 압도를 보인다.²⁾ 본고의 제1부에서는 위에 제시된 종류의 고문서들을 일별하고 그 특징들을 다루기로 하겠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호구 단자를 제외한 고문서를 하나하나 번역하고, 호구 단자는 家系를 언급할 때에 같이 언급하기로 하겠다. 편의상 이 집안의 가계를 살피는 것을 순서의 처음으로 놓는다.

러번다(簞)의 뜻을 나타내므로, 붓을 가지고 대나무나 비단 따위의 바탕에다 눈에 잘 드러나게 쓰는 것을 가리킨다(簞於竹帛, 謂之書: 說文 序). 현재 이 한자는 책(書冊)의 뜻으로만 쉽게 연상되는 흠이 있다. 그러나 문서라는 합성어가 쓰일 때에는 책을 포함하여 글로 쓰여진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된다. 광의의 고문서는 위에서 언급된 특징을 지닌 모든 것-가령 금속, 나무, 대쪽 등까지도 포함된다. 史料로서의 고문서에 대한 가치는 최승희(1981: 8~15)에 언급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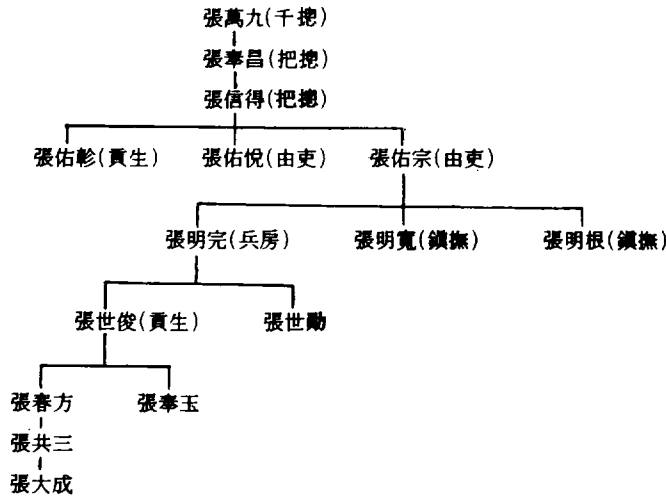
- 2) 필자가 온평리(濟州道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의 고문서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986년 7월 28일~31일 사이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실시한 현지학술조사에 참여함으로써였다. 조사 마지막날 온평리 張大成씨 집(온평리 544번지)에서 많은 수의 고문서들을 볼 수 있었는데, 주로 토지매매에 관한 문서들과 호구단자 및 재산상속에 관한 문서였다. 예정된 학술조사의 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를 뒤로 미루었다가, 4개월 뒤 다시 찾아가 그 집에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들을 전부 빌려올 수 있었다. 아래 도표는 그 집에 전해지는 고문서의 종류와 숫자를 나타낸다.

연 번	고문서의 종류	문서의 이름	숫 자
1	토지매매문서	明 文	49
2	토지매매문서	토지매매계약서	7
3	토지매매문서	相 換 記	3
4	호구단자	第 戶	33
5	准 戶 口	-	2
6	재산상속문서	都許, 業作, 別給	9
7	기 타	拮据, 契則 등	6

본고가 집필되는 동안 모든 고문서를 흔쾌히 빌려주신 장대성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溫平里 仁同 張氏의 家系

현재 온평리에 살고 있는 仁同 張氏家는 이곳에서 6대째 살고 있는 집안이다. 온평리로 이주하기 이전에는 北濟州郡 朝天面 朝天里에 살았었다. 고려조에 濟州에 入島한 張金用으로부터 제29세가 되는 張佑宗이 바로소 조천리에서 온평리로 이주하는 첫 조상이 된다. 장우종은 당시의 호구 단자 기록으로 보면, 由吏(지방 관아에 딸린 吏房의 衙前을 말함)를 지내었고 농사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다. 장우종의 직계 조상들도 대대로 구실아치의 일을 하였거나 武官職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 張信得은 把摠(각 軍營의 從四品 武官 벼슬을 말함)을 지냈으며, 그의 할아버지인 張奉昌도 과총의 직을 살았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張萬九는 軍營의 正三品 將官職에 해당하는 千摠을 지내었다.³⁾ 장우종이 조천에서 온평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호구 단자와 대동보를 참고하면, 장우종의 남자 형제는 자신을 포함하여 셋이 된다. 이중 한 형제는 異腹이며, 대동보 상으로 제일 맏이로 되어 있다. 장우종과 그의 아들 張明完을 중심으로 가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3) 이 직위들은 모두 호구 단자에 근거한 것임. 단 1888년의 准戶口에는 아버지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장명완과 장세준이다. 본고에서 다룰 고문서의 많은 수가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호구 단자를 통해 알아 보기로 하자. 장명완은 18세에 제출된 호구 단자에 營의 鎮撫로 되어 있고, 妻는 戶長 康應鶴의 딸로서 당시 나이가 28세였다. 단 이 당시에는 독립 가호가 아니라 아버지 장우종의 가호에 딸려 있었고, 호구 단자에 率子와 率婦로 올라 있다. 장명완이 독립 가호로 올라 있는 호구 단자는 이로부터 9년 뒤 해이다. 9년 뒤해의 호구 단자에는 장명완의 아들 張世能(당시 2세)과 아들의 며느리 鄭氏(당시 10세)가 함께 올라 있고, 집이 2間으로 되어 있다. 재미 있는 것은 장세능이 겨우 2세인데도 벼슬이 貢生⁴⁾으로 되어 있다. 또 며느리와 아들의 나이가 큰 차이를 보이며, 2살에 벌써 장가 든 것(?민며느리)이 특이하다. 장우종은 대동보에 의하면 1779년(己亥, 영조 3년)에 태어났고, 장명완은 1800년(庚申, 정조 24년)에 태어났다. 장명완의 출생년도는 호구 단자에 1811년(辛未, 순조 11년)으로 되어 있어서 대동보와 11년 차이가 있다. 장세준은 아버지 장명완과 25년 나이 차이가 진다.

2. 戶口單子 및 准戶口

호구 단자란 말은 한 가호의 식구가 기록된 목록이라는 뜻을 지닌다. 한 고을이나 나라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통일 신라 때 沙害漸村 등의 호구는 물론 그 마을 형세까지도 기록한 正倉院 帳籍은 현존

장신득이 천총으로, 할아버지 장봉창이 旗牌(軍營에 소속된 將校의 일종을 말함)로 되어 있다. 1891년의 준호구에는 아버지 장신득이 천총으로, 할아버지 장봉창이 學生으로 되어 있다. 인동 장씨 대동보에는 장신득이 通政으로, 할아버지 장봉창이 司果(五衛에 소속된 正六品의 軍職을 말함)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기록자들이 기록 태도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官의 立證이 이루어진 것은 준호구이다. 본고의 내용을 전개하는 데에 중요한 점은 다만 직계 조상들이 대대로 公의 地位를 갖고 있었던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 직위들이 實職인지 아니면 散職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로 한다.

- 4) 여기서는 향교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의 뜻이다. 공생이란 원래 常民으로서 향교에 나아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여서 儒生의 대우를 받는 자이다. 공생 가운데 우수한 자는 관찰사가 조정에 보고하여 生員 初試와 覆試에 응시할 자격도 주었다. 공생은 校生이라고도 불리운다.

하는 最古의 자료라고 하겠다. 조선조에는 언제나 戶籍 式年(곧 子·卯·午·酉가 들어 있는 해)이 되면, 그해 초에 각 지방 관아의 구실아치(監考)와 面任 里任 또는 호적의 파악과 작성을 위해 파견되는 監官 또는 管領 등이, 각 面別로 독립 가호를 이루는 자연 가호와 寺社에서 살고 있는 인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가호에서는 戶主가 戶口式에 좇아서 쓴 호구 단자를 2통씩 제출하였다. 제출된 호구 단자는 州郡에 보내어지거나 또는 당해 관청의 책임자(守令)가 前式年의 호구대장과 대조 확인을 한 다음, 각 里와 洞마다 家坐의 순서에 따라 五家씩 作統을 하고, 1통을 처음 제출한 호주에게 되돌려 보내었다(한영국 1980: 873-78). 여기서 한 가호의 출생 사망 이주 도망 流離 등의 상황이 모두 파악될 수 있었다. 그 해당 식년의 호구 단자를 바탕으로 戶籍大帳(또는 臺帳)의 原簿가 만들어지면 2부를 整寫하여 1부는 觀察使營에 보내고 1부는 戶曹로 보내었다고 한다.

호구 단자의 양식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최승희 1891: 267). 그러나 호주와 호주의 처에 대하여 4대조까지 행을 바꾸어 쓰는 것과 가족 상황을 쓰는 것은 공통적이다. 아래는 각각 經國大典 禮典 戶口式과 典律 通補別編에 나와 있는 호구 단자의 서식이다.

<경국대전의 호구식(連書되어 있음)>

戶 某部 某坊 第幾里(外則 稱某面 某里) 住 某 職 姓名 年甲 本貫 四祖
妻 某氏 年甲 本貫 四祖(庶人不知四祖者 不須盡錄)
率居子女 某某 年甲(女婿則 並錄本貫) 奴婢雇工 某某 年甲

<전율통보의 호구식>

某部 某坊 某契 戶口單子(外則 稱某面 某里)
第 統
第 戶住 具銜姓名 年幾 某干支生 本某
四祖 列書
奉母 某氏 年幾 某干支生 籍某
妻 某氏 年幾 某干支生 籍某
四祖 列書
率子女孫(若取婦 又低書 女婿 並錄本貫 有率戶 則列書 附子孫下)
率奴婢雇工 某某 年幾 某干支生
年號 幾年 某月 日

여기서 四祖란 父 祖父 曾祖父 外祖父를 가리킨다. 실상 은평리 고문서의 경우 대체로 위의 형식들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꼭 같지는 않다. 아래의 도판 1-b)는 장우종이 70세 나던 해에 작성된 호구 단자이다. 이 호구 단자에는 작은 아들인 장명근의 가호도 함께 올라 있다. 도판 1-a)에는 장우종이 제 3통의 우두머리(統首)임이 쓰여 있다.⁵⁾



1-a)

1-b)

5) 장우종이 호주로 되어 있는 단자는 총 14장이 전해진다. 장우종의 나이가 각각 51세, 61세, 62세, 64세, 65세, 66세, 68세, 69세, 70세, 71세 때의 것이다. 이는 3년식마다 호구단자를 올린다는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어렵다. 특히 그의 나이 60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해마다 호구단자를 작성하였다고 할 만큼 빈번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842년(현종 8년) 3월 을축(17일) 및 1846년(현종 12년) 정월 갑신(28일)조에 제주 삼읍의 호구를 조사하였던 기록이 있다. 1842년은 壬寅年으로 소위 호적 식년으로 규정된 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엄격히 호적 식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왜 이런 파격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장우종이 51세 되는 해는 1828년이고 71세 되는 해는 1848년이다. 이에 비해 다음에 살 필 준호구는 호적 식년인 戊子年과 辛卯年에 발급되어 있어 대조를 이룬다.

准戶口란 각 가호의 호주가 호구 단자를 2부 관청에 제출하여 戶籍의 확인 또는 작성이 끝나게 되면, 관청으로부터 그 호적(原籍)에 准(의거 또는 比照)하여 贍給받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호적 등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발급하므로 朱印 및 수령의 手決이 있고, 등본을 만들다가 틀리게 되었을 때에 그 고쳐진 것이 관청의 원적과 맞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黑印-周挾 幾字改印-이 찍혀 있다. 경국대전 禮典에 있는 준호구의 서식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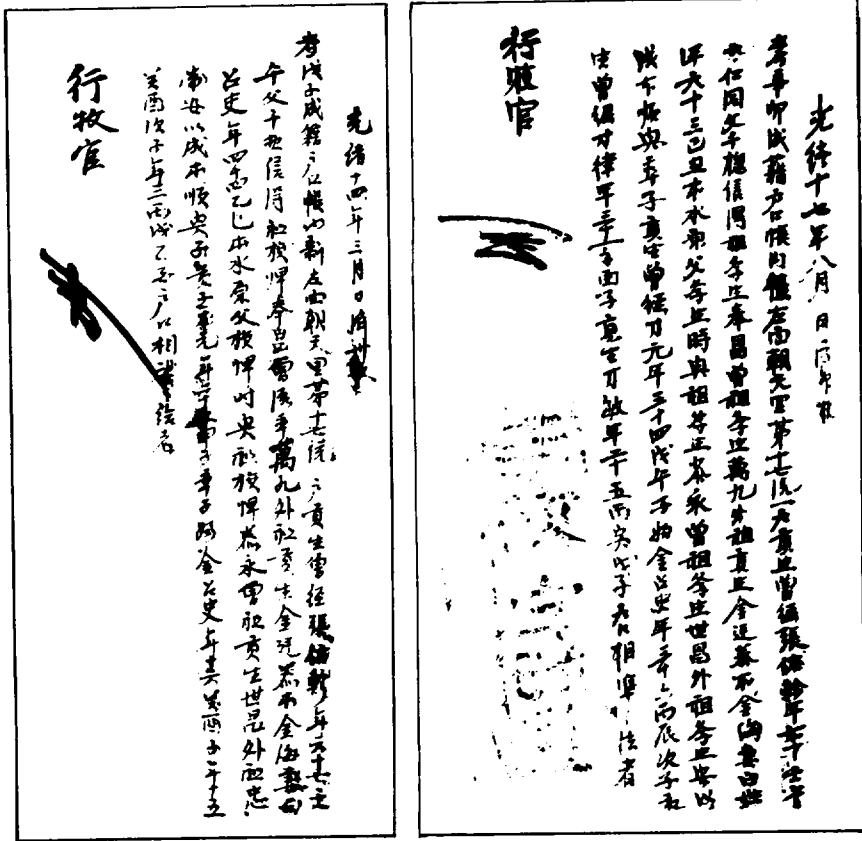
〈경국대전의 준호구식〉

某年 某月 日 本府(外則 稱本州 本郡) 考 某年成籍 戶口帳內 某部 某坊 云云
 奴婢 某某 年甲 等 准給者
 漢城府 堂上官押 堂下官押(外則 稱其邑 其職)
 周挾 改幾字(無則 云無) 橫書經印

위의 요지는 어느 관청에서 어느 해에 만든 호적(내용)을 고찰하고 이에 의거하여 발급한다는 뜻이다. 장씨 집안에 전해지는 준호구는 2부인데, 이들은 모두 장우종의 큰 형인 장우진에게 발급된 것이다.

본 호구단자의 서식은 「第戶 姓名 年甲 本貫 職業 四祖 妻某召史 年甲 率 居子女 某某 年甲 男女 共合幾口 家幾間」으로 요약할 수 있다. 妻의 四祖는 생략되어 있고, 妻의 本貫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거주지의 표시도 전혀 없다. 대신 단자 말미에 전체 식구와 집채 크기가 명세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도판 1-a)에서 「男-2 女-2, 共合(모두 합하여) 4口(식구)」로 되어 있는 것은 작은 아들인 장명근과 며느리 이씨가 같이 기거하기 때문이다. 도판 1-b)에서는 아들이 독립되어 나갔기 때문에 남녀 각각 1명씩으로만 올라 있다. 그리고 家 2間으로 되어 있는데, 間이란 1坪-곧 사방 6尺의 면적을 나타내므로, 전체 2坪의 집을 말한다(原, 新補 受教輯錄 법제처 자료지 제16집 1964:70). 때로는 間을 집안 내부의 구획된 공간을 뜻한다고도 하는데(高光敏 제보), 가령 한 채의 집에 두 개의 공간이 구획된 경우가 2間이 되는 것이다.



2-a)

2-b)

도표 2)의 서식은 경국대전(1888)의 것과 대동 소(1889)의 것이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 번 호적 식년 때의 것과 서로 대조한다는 結辭가 더 첨가된 것뿐이다.⁶⁾ 준호구와 호구 단자는 피상적으로 관청의 押印이 있는지의 여부로써 가름할 수 있을 듯

6) 도판 2-a)는 광서 14년(戊子年 1888년) 3월 일 제주목에서 그 해 무자년에 만들어 놓은 호구 대장 속의 내용(云云)을 고찰하고, 지난 호적 식년 乙酉年(1885년)의 호구와 서로 대조 확인하여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云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곧 호구 단자의 내용이 되겠다. 1889년 3월에는 沈遠澤 목사가 재임 중이었고 1891년 8월에는 趙均夏와 鄭龍基가 목사직을 체임하는 기간이었다. 본문 가운데에 召史라는 말은 良民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古今釋林 중 羅麗史讀 참조)이라고 하며, 때로는 미성년의 여자까지도 가리킨다고 한다.

하나, 호구 단자에도 官印과 官長의 押印이 있는 경우도 있다(최승희 1981 : 223 및 273-74). 이는 호구 단자가 관청의 대조 확인을 거친 다음에 호주에게 다시 되돌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준호구와 호구 단자가 서로 밀접히 관련됨을 의미하는 실례라 하겠다. 이들 양자 사이의 차이는 결국 형식적인 면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서식상으로 준호구는 連書하고 있으나, 호구 단자는 別行으로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준호구의 성격은 호구 단자의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는 것이므로, 호구 단자의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3. 토지 매매문서

토지의 매매는 멀리는 신라와 고려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민현구 1981 : 71-95). 다만 이 매매는 일부에 그치는 것이었다. 조선 초기에 새로운 科田法의 시행으로 상속을 제외한 매매 또는 처분 행위가 여전히 금지되어 오다가, 1424년(세종 6년) 토지 매매가 허용되었다(박병호 1974 : 123ff)⁷⁾. 경국대전 戶典 買賣限 규정을 보게 되면, 田地와 家畬를 사고 팔 때 15일을 기한으로 그때까지 勿改하면 사고 파는 자 모두가 1백일 이내에 관청에 알리어서 立案을 받도록 하고 있다.⁸⁾ 그러나 입안은 조선초기에도 철저하게 행해지지 못하였고, 壬亂 이후부터는 지배적으로 관청의 입안을 받지 않고서 다만 문기의 인도로써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최승희 1981 : 319)⁹⁾. 본고에서 다루는 문서들도 관청의 입안

- 7) 이에 대한 근거로서 다음의 세종 6년 3월 기해의 京畿 監司 啓가 인용된다.
凡田地放賣人…而其價錢, 並皆沒官, 冤抑不少. 且京中造家基地菜田, 猶許放賣獨外方田地, 禁其買賣, 未便, 請毋禁買賣. 其不稅契不過割者, 依律施行, 其限年放賣田宅, 從明文決給.
여기서 서울에서의 매매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골만을 유독 허락하지 않음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稅契(수수료인 稅錢의 납부를 의미)와 過割(地籍의 명의 변경을 의미)을 하지 않으면 律- 곧 대명물지해의 戶律 典 買田宅-의 조항에 따라 벌을 주도독 청하고 있다.
- 8) 立案이란 말은 관청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여 公證해 주는 문서를 가리킨다. 가령 田地나 家畬의 매매나 양도 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所志를 관청에 올려 立案에 주도록 청하면 관청에서는 거래의 당사자와 筆執 증인 등의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 招辭를 받고 立案을 만들어 준다. 이때 당사자가 올린 소지와 明文, 그리고 傍音(사고 팔았다는 다짐) 및 立案文을 풀로 붙여 넣고, 그 이은 부분에서 관청의 印信을 찍은 다음 입안을 신청한 사람에게 되돌려 준다. 이러한 입안의 효력은 오늘날의 登記에 비교될 수 있다.
- 9) 立案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으로 박병호(1974 : 138)에서는 다음의 요인

이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매 문서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는 거래 당사자들 이외에 證筆이 있어야 한다. 증필이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와 글 쓴 자를 가리키는데, 이 두 역할은 한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둘째 문기는 반드시 諺文을 피해야 한다. 언문으로 쓴 문기는 받아서 수리하지 못한다. 이는 아래 肅宗의 교지에서 잘 드러나 있다.

出價成文 必具證筆者 聽理 諺文及無證筆者 勿許聽理(康熙乙卯-1675년 숙종1년
-承傳, 受教輯錄 戶典 出價)

빚을 내려고 문기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증필을 갖춘 것을 청리(소송을 듣고 심리)한다. 언문과 증필이 없는 것을 청리함은 허락하지 말라.

매매 문서의 서식은 儒胥必知의 文券規式을 참조할 수 있다. 문권 규식에는 사대부의 家畬 문권과 상인의 가사 문권, 畚券, 婢 문권, 價用 문권, 山地 문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중 답권이 우리가 말하는 토지 매매 관계가 된다. 이 부분을 옮겨 살피기로 하자.

大國年號 幾年(甲子) 某月 日 前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契用處 某邑 某面 某里 伏在 天字 第一番 一員 二束 幾斗落 幾夜味 庫叱果 地字 第幾田 幾負 幾束 幾日耕 願買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 族屬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 下正事

財主姓名(着名), 證人姓名(着名), 執筆姓名(着名)

중국의 연호 갑자 년 월 일 어느 누구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저으기 긴급히 쓸 곳이 있어서 어느 곳에 소재한 토자 제1답 1원 2속 몇말지기 몇배미 곳과 地자답 제 몇전 몇부 몇속 몇날 같이 를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영 팔아버리므로 일후에 자손 족속 가운데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알리어 바르게 구변할 일.

을 들고 있다. ① 입안할 때에 관청에다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作紙)의 부담이 과중하였다. ② 매매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관청에 나아가야 하는 절차의 번잡성이 있었다. ③ 실제로 토지의 매매는 친족이나 같은 또는 이웃 동네의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하여 비용이 들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관청의 입안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들 사이의 신의와 공동체 내부의 규범 의식에 의해 매매 행위가 보장될 수 있었다.

明文이란 말을 쓴 이유는 만약의 경우 관청에 알리어 卞正할 때 밝게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기 때문이다. 禾穀의 수량을 셀 때에는 다음의 단위들이 쓰였다. 제일 작은 것이 우선 한 줌에 해당하는 1握 또는 1把다. 이들의 한자는 모두 쥐다는 뜻을 지닌다. 1파는 또 면적의 단위로 쓰이면 1尺平方이 된다. 이는 그 면적에서 그만한 곡식이 소출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10把가 모이면 1束이 되는데 이는 묶음의 뜻을 지닌 한 뜻으로 읽는다. 10束이 모이면 1負가 되는데, 이는 짐을 지다는 뜻을 지녀서 때로는 짐을 뜻하는 이두어 卜으로도 쓰인다. 1백負가 모이면 1結이 된다. 結을 맺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한 맺(장지영 장세경의 이두사전)으로 읽히고 있다. 이런 단위들이 면적을 나타낼 때에는 그 토지의 비옥 여부에 따라서 다소 면적이 좁아지기도 하고 다소 넓어질 수도 있었다. 그 기준이 소출의 정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斗落과 付只가 있다. 전자는 말(마)지기라고 읽히는 보편적인 용법인데 지기는 농사를 짓다(곧 몇 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서 온 말인 것으로 보인다. 付只는 본고에서 다룰 문기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이다. 付가 ‘붙이다’ 또는 ‘부치다’의 訓을 갖고 있고, 只는 이두에서 ‘기’라는 음으로 읽히므로, 본고에서는 ‘부치기’라고 읽었다. 그 뜻은 씨앗이나 종자를 뿌릴 수 또는 붙일 수 있는 면적의 땅으로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日耕과 夜味가 있다. 소가 며칠을 갈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앞의 日耕을 뜻하고, 뒤의 것은 논과 논 사이를 구분한 곳인 (논)배미를 말한다.

논이나 밭은 위의 명문에서 天字 또는 地字 第一畝이거나 第幾田으로 표현되었다. 천자문의 글자로서 밭 이름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룰 문기들에서는 이와는 달리 所謂 某某田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주에서는 모든 밭이 고유명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밭을 나타내는 데에는 員이란 말을 쓰고 있다. 이 글자의 訓은 ‘田在處’(밭 있는 곳)이라고 하고 음을 우리나라 방식인 ‘곳’으로 읽고 있다(김종훈 1983:167). 이곳에서는 員伊라는 말로 쓰여서, 入聲音으로 끝났다가보다는 開放音으로 끝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員伊로 쓰여진 곳의 俗稱은 거의 ‘머리’ 또는 ‘마리’로 불리운다. 제주 서쪽 지역(애월)에서는 밭이 있는 곳을 ‘도랑’이라고 부르지만, 본고에서는 일관하여 ‘마리’라고 옮겼다. 논이나 밭이 있는 위치를 나타낼 때에 伏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뜻은 아직 필자로서는

알 수 없다. 이 한자의訓이 ‘곳불 북’(光州板千字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훈을 이용하여 이두어를 만들어 보아도 신통한 단어가 되지 않는다. 伏의訓에 藏의 뜻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保藏되어 있는’ 정도로 새겨 둔다. 또 논이나 밭을 가리키는 명사로서 庫叱이란 단어가 쓰인다. 본고에서 다를 문기는 다만 庫라고 쓰고 있으나, 이 단어는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인 ‘곳’의 이두어이다.

매매 조건에서 永永放賣라고 표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영영 팔아버린다는 말은 임시로 팔아버린다 또는 돌려 받을 것으로 팔아버린다는 단어인 姑爲放賣 權賣 還退放賣 등과 반대의 개념이다. 원칙상 토지나 집을 사고 팔았을 때에는 15일 이내라면 산 사람이라 하여도 완전히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放賣에 합의하면 파는 당사자로서부터 돌려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永永이라는 부사를 머리에 얹었다. 이럼으로써 뒷날 시시비비가 생겨날 경우, 이 명문을 글을 근거로 하여 관청에 알리고 매매성립의 보장을 받게 된다.

4. 재산 상속 문서

재산을 상속하는 데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문서로써 이루어진다. 첫째는 遺書에 의해서이다. 조선조 때의 유서의 내용은 거의가 제사를 받드는 문제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대종을 이룬다고 하며 자필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승희 1983:315). 둘째는 재산을 물려 줄 자가 죽기 전에 물려 받을 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거기서 재산을 나누어 주는 형식이 있다. 이를 都許文 또는 都會文이라고 부른다. 편의상 도허문만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겠다.¹⁰⁾ 이 도허문 외에 각 상속인에게는 따로 葉作記(또는 俠作記)라는 문기를 만들어 주었던 듯하다. 세째로는 和會文記이다. 화회문기란 財主가 죽고 나서 상속 받을 자들이 서로 모여 재산을 나누어 갖는 문서가 된다. 이밖에 別給文이 있으나, 이는 반드시 죽음과 관련되어 발급되는 것이 아니었다. 재산을 주되 주는 시기는 여러가

10) 都許와 都會의 都는 상속 받을 자 모두를 일컫는 용어로 보인다. 許는 許給 즉, 깃급을 허락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會는 모였다는 뜻을 나타낸다. 결국 都許는 상속 받을 모두에게 물려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都會는 상속 받을 자 모두가 모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가령 생일, 과거 급제 축하, 혼례, 병 치료, 개인적 정분 등).

본고에서 다룬 문서는 모두 두번째 부류에 해당한다. 도허문은 財主의 자필로 쓰여지며 각 상속자마다에게 돌아갈 밭이나 집채 등을 항렬 순서로 적게 된다. 그리고 각 상속자들은 반드시 財主 着名의 엽작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엽작기에 있는 着名(싸인)은 상속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 화회문기에서도 “一人 未着名 則勿施”(속대전 형전 文記)라고 표현되었듯이, 이름을 써 붙이지 않은 경우는 그만큼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듯하다. 재산 상속에서 흔히 나오는 용어는 衿給이라는 단어다. 이는 깃급으로 읽게 되는데, 그 뜻은 ‘끼쳐서 주는’으로 이해된다. 곧 부모가 遺與한다는 뜻의 이두이다(박병호 1985 : 131ff.). 제주에서는 흔히 ‘분깃’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는 分衿을 구개음화된 음으로 읽고 있는 것이며, 그 뜻은 (상속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끼친다(물려준다)’가 된다. 또한 衿得이라는 용어도 자주 나오는데, 이는 ‘유산으로 얻은-곧 끼쳐서 얻은’의 뜻으로 쓰인 것이며, ‘깃득’으로 읽었다. 엽작기에는 특이한 용어로 印이라는 글자가 맨 마지막에 쓰이고 있는데, 이는 마감이나 끝을 나타낼 때 이두식 쓰는 표현이다(吏讀便覽).

개인들에게 인장 사용이 보편화된 것은 오랜 일이 아니다. 개화기 이전에는 흔히 이름자를 변형시켜 자기 고유의 징표로서 사용하였다. 이를 手決(손으로 결재한다), 또는 着名(이름자를 써 붙였다) 등으로 부른다. 그 변형 방법으로 이름자를 草書로 써서 베풀거나, 또는 글자 모양의 상하 좌우를 뒤바꾸거나 변방을 메어내어 흘림으로써 남이 흉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서구에서 사용하는 싸인이 바로 수결인 것이다. 着名을 때로는 뒷면에다 하는 수가 있다. 이를 背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背面에 着名하였다는 줄임말로 볼 수 있다. 背着의 앞에 喪이라는 말이 올 수도 있는데 喪의 목적어는 着名으로서, 着名함을 잃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상민이나 천민들은 대신 手寸을 사용하였다. 왼쪽은 陽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陰을 나타내므로, 남자는 왼쪽 손을 그리고 여자는 오른쪽 손을 그리는데, 남자는 左手의 中指 모양을 뜨고 여자는 右手의 中指 모양을 떴다. 양반 집의 부인은 인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그 규격은 경국대전에 규정돼 있다. 관청의 직인은 반드시 홀수로 찍어야 하며 평상시에는 붉은 인주를 사용하고 국상이 있을 때에는 검은 먹물을 찍어 사용하였다.

第2部

제2부에서는 온평리 고문서의 원문과 그 번역을 나란히 실기로 한다. 번역은 가급적 직역과 풀어 읽기를 위주로 하였다. 문서들에 매겨져 있는 일련의 번호들은 필자가 임의로 연대를 따라 매긴 것에 불과하다. 처음 부분에 매매 문기를 두었고 다음에 상속 문기를 두었다. 상속 문기는 다만 도허문과 엽작기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을 견본으로 추려서 번역하였다. 본 문기 내에 있는 이 두어들의 연구는 따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 道光貳拾壹年 辛丑(1841) 七月 二十四日 康亨元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當此穴歲矣 禮木提(?捉)督之餘 不勝捧納乙仍于 同人處 正木壹疋貳拾尺貨納後 價本段 他無報給之勢 故矣母長男處 買得田 所謂長童山員 粟種柴升付只田 四標段 東康用任田 西南康日樂田 北康國現田 四標分明田 庫乙 同亨元處 壹疋貳拾尺價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此後族屬子孫中 爭田者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爲乎事

田主 金順夢(着名)

執筆 宋宗悅(着名)

도광 21년 신축(1841년) 7월 24일 강형원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이 穴歲(죽을 나이)를 당하였으되 禮木(예물로 주는 무명)을 提督(?捉督)한 나머지, 물건 捧納(바치어 올림)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같은 사람에게 正木(품질이 아주 좋은 무명) 1필 20자를 대신 납부케 한 뒤, 값싼은 달리 값아 줄 형세가 없으므로 내 어머니 큰 오라비에게 사들인 밭인 소위 長童山 마리(員) 조 종자 7되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판은 동에 강용임의 밭이고 서남에 강일락의 밭이고 북에 강국현의 밭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강형원에게 1필 20자 값에 문기와 아울러 영영 방매(팔아 버림)하므로, 이후 족속 자손 가운데 밭을 싸우는 경우가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가에 알리어 바름을 구변하올 일.

밭 주인 김순몽, 붓 잡은 사람 송종열

2. 咸豐貳年 壬子(1852) 肆月 貳拾參日 朴信雄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 康國尙處 商賈木壹疋拾伍尺 捧上 田所謂府拒永北邊員 皮

牟柴斗付只田 同人處 放賣是矣 四標段 東康國點田 北童山及官田 西朴眞祿田 南○○
四標分明田 庫乙 同人處 永永放賣○ 而本文已并以許與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卞正事

田主 趙明祿(着名) 筆執 玄宗河(着名)

합풍 2년 임자(1852년) 4월 23일 박신웅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이 몸이 진요하게 쓸 소치로 강국상에게 商賈(장사
아치) 무명 1필 15자를 받아들이고 밭 소위 府拒永 북쪽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7
말 부치기 밭을 같은 사람에게 방매(팔아 버림)이되, 사방의 표지판은 동에 강국점
의 밭이고 북에 동산 및 官田이고 서에 박진녹의 밭이고 남에(사람 이름 관독 불능)
인 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사람에게 영영 방매(보조어미 관독 불능) 이
문기와 아울러 주는 것을 허락하니, 만약 쓰잘데 없는 말을 하는 허물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르게 구변할 일.

밭 주인 조명록, 붓 잡은 사람 현중하

3. 同治九年 庚午(1870) 三月 十日 張佑宗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父主衿給田 里內員 壹庫田 皮牟陸斗付只 正木貳拾肆疋 準計捧上後
四標段 東西北李時明門路田 南高春弘田 四標分明田 庫乙 弟佑宗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自筆 張佑軫(着名)

동치 9년 경오(1870년) 3월 10일 장우종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 아버님 물려 주신 밭인 里內(?마을 안) 마리
(員) 1곳 밭 것보리 6말 부치기를 正木(품질이 아주 좋은 무명) 24필에 準計(기준에
맞추어 계산하게 함)하고 받아들이 뒤, 사방의 표지판은 동서북에 이시명의 門路田
(이문 길 밭)이고 남에 고춘홍의 밭인 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아우 장우종에
게 영영 방매(팔아 버림)하므로, 일후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憑考할(살펴볼)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장우진

4. 光緒肆年 戊寅(1878) 正月 拾柒日 趙遠鍾處 明文

右明文事段 同人處 正木參疋貨用後 報給無路 故矣妻分衿給田 所謂鑑朴伊水員 米粟
陸升付 標段 東宋如尙田 西趙尙喆田 南小路及康始云田 北鄭○天田 標分明田 庫乙 右
遠鍾處 木參疋價 永永放賣矣 本文記段 業作記中載錄 故不得許給爲去乎 若有日後雜談
之弊是去等 持此文 卞正事

田主 韓庭龍(着名) 執筆 玄昌榮(着名)

광서 4년 무인(1878년) 정월 17일 조원중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판은, 같은 사람에게 正木(품질이 아주 좋은 무명) 3필을 빌어쓴 뒤 갚아 줄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 처 아버지(가시아방)가 몫으로 준 밭 소위 鑑朴伊水 마리(員) 米粟(쌀과 벼) 6되 부치기-표지판은 동에 송여상의 밭, 서에 조상철의 밭, 남에 작은 길과 강시운의 밭, 북에 정(관독 불능)천의 밭-표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 원중에게 무명 3필 값으로 영영 방매(팔아 버림)이되, 본 문기판은 業作記 가운데 실어 써서 고로 깃급(재산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만약 일 후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글을 가지고 구변하여 바를 일.

밭 주인 한정룡, 붓 잡은 사람 현창영

5. 光緒柒年 辛巳(1881) 七月 參拾日 高啓得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急有用處 右人處 錢文柒兩貸出 用下後 價報段 報給無路 故矣祖上 流來田 所謂毛南槐嶼西南邊員 稷種壹斗付田 一庫 四標段 東小路及高令監 西趙尙室 南小路及玄智弘田 北賣者田 標分明田 一庫乙 右人處 錢文柒兩價 永永放賣爲去乎 後 若有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明文 告官 卞呈事

追 本文記段 都會中載錄 故不得許給事

田主 玄彭文(着名) 筆執 康興松(着名)

광서 7년 신사(1881년) 7월 30일 고계득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은 이 몸에 급히 쓸 곳이 있어서 오른쪽 사람에게 錢文(돈) 7냥을 대출하여 지출한 뒤, 값을 갚아 줄 길이 없어, 그러므로 내 조상에게서 내려오는 밭 소위 毛南槐 硯 서남쪽 가장자리 마리(員) 기장 종자 1되 부치기 밭 1곳-네개의 표지판은 동에 작은 길과 고 영감(의 밭 : 고계득), 서에 조상실(의 밭), 남에 작은 길과 현지홍의 밭, 북에 파는 사람의 밭-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 사람에게 錢文(돈) 7냥 값으로 영영 방매하므로, 뒤에 만약 자손 족속 가운데 쓰잘데 없는 얘기를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밝히우는 글을 가지고 관가에 알리어 구변하고 바를 일.

덧붙임 : 이 문기판은 都會 가운데 실어 써 넣으므로 깃급을 허락하지 못할 일.

밭 주인 현팽문, 붓을 잡은 사람 강홍송

6. 光緒十年 甲申(1884) 九月 二十三日 長嶠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緊有用處 故錢文拾柒兩貸出後 價報段 買得是在 長童山員 皮麩捌斗付只 標 東小路 西宋光悅及康頭元 南長童山 北鄭希俊田 四標分明田 庫乙 明完處 錢拾柒兩 價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他田并付 故不得許與爲去乎 後若有更言之弊是去等 持此文

記 相考施行事

田主 妻父 康(喪 背着)

筆執 康化福(着名)

광서 10년 갑신(1884년) 9월 23일 큰 사위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긴급히 쓸 곳이 있었으므로 전문(돈) 17냥을 대출 하였으나 뒤에 값 갚기때은 사 놓은 長童山(진동산) 마리(員) 걸보리 8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 서에 송광열과 강두원(의 발), 남에 장동산, 북에 정희준의 발-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명완에게 돈 17냥 값으로 영영 방매(팔아 버림)이 되, 본 문기때은 다른 밭에 아울러 붙이므로 갖급하여 주지 못한다. 뒤에 만약 다시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相考할 일.

밭 주인 처 아버지 강, 붓을 잡은 사람 강화복

7. 光緒十一年 乙酉(1885) 正月 二十四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家親京換條夥多 故流來是在 所謂淪濱伊飛來西北邊員 稷種壹斗付只表 東玄彭元金仁伯田 西玄昌念及童山 南童山 北康智鶴玄仁吉田 四表分明田 庫乙 同明完處 捧價文玖兩 永永放賣 而本文記段 都許載錄 故不得許與爲去乎 後若有更言之弊是去等 以此相考施行事

田主 高雲弼(着名)

執筆 宋成桓(着名)

광서 11년 을유(1885년) 정월 24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내 집 어른의 京換條(서울서 시골로 부치는 換錢)가 과다하므로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것인 소위 淪濱伊 빌레 서북 가장자리 마리(員) 기장 종자 1말 부치기-(사방의) 표시는 동에 현행원 김인백의 밭, 서에 현창님(의 밭)과 동산, 남에 동산, 북에 강지학과 현인길의 밭-사방의 표시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명완에게 받는 값 돈 9냥에 영영 방매하고, 이 문기때은 都許文에 실어 쓰므로 갖급하여 주지 못하니, 뒤에 만약 두말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것으로써 相考를 할 일.

밭 주인 고운필, 붓을 잡은 사람 송성환

8. 光緒拾壹年 乙酉(1885) 八月 二十六日 玄(?始)念處 明文

右明文事段 緊有用處 故錢文貳拾兩價用後 價報 流來是在 所謂鷹旨員伊 稷壹斗伍(?升)付 四標 東旨 西吳命升田 南康致伯田 北童山 標分明田 壹庫乙 同(?始)念許 價錢貳拾兩價 永爲放賣是遺 本文記都許載錄 故不得許給 日後憑考事

田主 自筆 高雲弼(背着)

광서 11년 을유(1885년) 8월 26일 현(?시)님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판은, 긴급히 쓸 곳이 있으므로 전문(돈) 20냥을 빌려 쓴 뒤, 값 갚기는(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소위 鷹旨(매마루) 마리(員) 기장 1말 5되 부치기-사방의 표지는 동에 마루, 서에 오명승의 밭, 남에 강치백의 밭, 북에 동산-표지가 분명한 1곳을 같은(?시)님에게 빌린 돈 20냥의 값에 영원히 방매(팔아 버림)함이고, 이 문기를 都許文에 실어 기록하므로 갖급하지 못하는 것이니 日後 憑考할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고운필

9. 光緒十一年 乙酉(1885) 十月 二十七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 緊有用處 故右明完處 錢文參拾貳兩價用 而價報 流來田 所謂加黃伊員 米粟參斗付 標 東賣者田 西玄(?)表田 南康國化田 北玄智弘田 標分明田 庫中 區有墻田 貳庫 賣者田 其外無墻 永爲放賣 而本文記 他田并付 故不得許與 日後憑考事

田主 自筆 高雲弼(喪 背着)

광서 11년 을유(1885년) 10월 27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은, 긴급히 쓸 곳이 있어서 전문(돈) 32냥을 빌려 썼는데, 값을 갚기는(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밭 소위 加黃伊 마리(員) 米粟(쌀과 벼) 3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파는 사람의 밭, 서에 현(?)표의 밭, 남에 강국화의 밭, 북에 현지홍의 밭-표지가 분명한 밭 곳(장소) 가운데 구획에 담장 있는 밭 2곳은 파는 사람의 밭이고, 그 밖의 담장이 없는(부분을) 영영 팔아 버리며, 이 문기를 다른 밭에 아울러 붙여 고로 갖급을 허락하지 못하므로 일후에 빙고할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고운필

10. 光緒十一年 乙酉(1885) 十月 二十七日 康才雄處 明文

右明文事 緊有用處 故右才雄許 錢文貳拾參兩價用 而價報 里內所謂前童山員伊 皮牟肆斗付 標 東小路 西賣者田 南玄彭元田 北金仁伯田 標分明田 庫 右錢貳拾參兩價 永爲放賣 而本文記 他田并付 故不得許與 日後憑考事

田主 自筆 高雲弼(喪 背着)

광서 11년 을유(1885년) 10월 27일 강재웅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은, 긴급히 쓸 곳이 있으므로 오른쪽 재웅에게 전문(돈) 23냥을 빌려 썼는데, 값을 갚기는 里內(?마을 안) 소위 前童山 마리(員) 걸보리 4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 서에 파는 사람의 밭, 남에 현행원의 밭, 북에 김

인백의 밭-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 23냥의 값에 영영 팔아 버리는데 이 문기를 다른 밭에 아울러 붙이므로 깃급을 허락하지 못하며 일후에 빙고할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고운필

11. 光緒十一年 乙酉(1885) 拾貳月 貳拾捌日 康履亨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急有用處 故同人處 錢文拾壹兩貨用後 價報段 報給無路 故矣買得 所謂官田員伊 矣季妻伊康沃旭家基代 所捧田 所謂上畚東南邊員伊 皮甦貳斗伍升付只 四標段 東妻伊康沃哲田 西北小路 南康應鶴家基田 四標分明是遺 本文記段 沃旭處 家基相換文 捧給之意如是 明文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李完淑(着名) 筆執 宋成桓(着名)

광서 11년 을유(1885년) 12월 18일 강이형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이 몸에 급히 쓸 곳이 있어서 그러므로 같은 사람에게 전문(돈) 11냥을 빌려 쓴 뒤, 값을 갚기만은 값아 줄 길이 없어 그러므로 내가 사 놓았던 소위 官田 마리(員), 내 작은 처남 강옥옥의 집터 대금으로 받은 바의 밭인 소위 上畚 동남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2말 5되 부치기-사방의 표지만은 동에 처남 강옥철의 밭, 서북에 작은 길, 남에 강응학의 집터 밭-사방의 표지 분명이고, 이 문기만은 강옥옥에게 집터를 서로 바꾸는 문기를 바쳐 주는 뜻이라고 하는 明文(밝히우는 글)을 하오니, 일후 만약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 이완숙, 붓을 잡은 이 송성환

12. 光緒十二年 丙戌(1886) 二月 十六日 金仁○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 故同人處 錢文柒兩貨用後 價本段 變通無路 所謂長童山西南邊員 皮牟貳斗付只田 一庫 田四標段 東路 西康之雄田 南李時旭 北小路 四標分明田 一庫乙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 告官述呈爲乎事

自筆 田主 玄彭樹(着名)

本文記段 都會在景故

광서 12년 병술(1886년) 2월 16일 김(뺏어져 없어짐, 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이 몸이 긴급하게 쓸 소치로 그러므로 같은 사람에게 전문(돈) 7냥을 빌려쓴 뒤, 값만은 변동할 길이 없어 소위 長童山 서남쪽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2말 부치기 밭 1곳-사방의 표지만은 동에 작은 길, 서에 강지

웅의 밭, 남에 이시옥(의 밭), 북에 작은 길-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사람에게 영영 팔아버리므로, 일후 자손 가운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글을 가지고 관가에 알리어 변정(바르게 판별)하을 일.

스스로 쓴 밭 주인 현평수

이 문기만은 都會에 실어 쓰는 고로(이하 없음)

13. 光緒十二年 丙戌(1886) 四月 十九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急有用處 故矣買得是在 所謂上畚東南邊員 皮牟貳斗伍升付只 標 東康沃哲田 西北小路 南買者田 四標分明田庫乙 同明完處 捧價文拾壹兩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若有更言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田主 康履亨(著名) 筆執 康履鶴(著名)

광서 12년 병술(1886년) 4월 19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급히 쓸 곳이 있는 고로 내가 사 두었던 것인 소위 上畚田 동남쪽 가장자리 마리(員) 길보리 2말 5되 부치기-표지는 동에 강옥철의 밭이고, 서북에 작은 길이고, 남에 사는 사람의 밭-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명완에게 받는 값 11냥에 이 문기와 아울러 영영 팔아버리므로, 뒤에 만약 다시 얘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가에 알리어 판별할 일.

밭 주인 강이형, 붓을 잡은 사람 강이학

14. 光緒十五年 己丑(1889) 五月 二十五日 康尙根處 明文

右明文事段 妹夫田買得 而妻舅弟四路 生牛一首價幾許兩 田價幾許兩 無他相換是矣 所謂學古田 粟八升付只田 四標段 東高啓正田 西宋信老田 南宋石順田 北宋信老田 四標分明田 庫乙 相換是遺 日後更言之弊 則以相換文 尙考事

相換主 洪信安(著名) 筆 金讚伯(著名)

광서 15년 기축(1889년) 5월 25일 강상근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妹夫의 밭을 사 두었는데 그러나 妻舅 동생 四路和 生牛(어린소?) 1마리 값 얼마쯤의 냥과 밭 값 얼마쯤의 냥을 다름 아니라 서로 바꾸되, 소위 學古田 조 8되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만은 동에 고계정의 밭, 서에 송신노의 밭, 남에 송우순의 밭, 북에 송신노의 밭-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서로 바꾸되, 일후 다시 얘기하는 폐단이 있으면 相換文(서로 바꾸는 글)으로써 상고할 일.

相換하는 주인 홍신안, 붓 잡은 사람 김찬백

15. 光緒十五年 己丑(1889) 九月 初一日 妹夫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父主山債報給之意 於莒田東南邊員 半(?夏) 伍升付只 表 東玄仁寶田 西名不知鄭哥田 南名不知(?玄)哥及從兄田 北賣者田 四標分明田 庫乙 右人處 山債 拾兩報給次 支計後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榜田并付 故不得許與爲去乎 後若有更言之弊是去等 以此文記 憑考事

田主 妻 姻 康漢(?欄)(喪 背着) 筆 季父 履鶴(着名)

광서 15년 기축(1889년) 9월 초1일 매부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고 하는 일딴은, 아버님의 山債(묘소 대금)를 갚아 줄 뜻으로 於莒田 동남쪽 가장자리 마리(員) 半夏(?벼)5되 부치기-표시는 동에 현인실의 밭이고, 서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정씨의 밭이고, 남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현씨의 밭과 從兄(사촌 형)의 밭이고, 북에 파는 사람의 밭-사방의 표시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의 사람에게 묘소 대금 10냥을 갚아 주려고 支計(계산)한 뒤 영영 팔아버리기에, 이 文記탄을 열밭에 아울러 붙이므로 許與(자손에게 재산으로 물려주거나 남에게 인도함) 하지 못하니, 뒤에 만약 두말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으로써 憑考할 일.

밭 주인 처남 강한(?책), 붓 잡은 사람 작은 아버지 강이학

16. 光緒十五年(15년은 18년의 잘못된) 壬辰(1892) 十月 初一日 張佑宗 明文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故買得壹片(?果)勿 壹斗付只田 東西南矣田 北小路 分明田 壹庫乙 錢文參拾兩價 永永放賣爲去乎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枝此文記 憑考爲乎事 田主 自筆 高光宗(着名)

광서 15년(18년의 잘못된) 임진(1889년) 10월 초1일 장우종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긴급하게 쓸 소치로 고로 壹片(?果) 勿 1말 부치기 밭-동서남에 나의 밭이고, 북에 작은 길임-분명한 밭 1곳을 錢文 30냥 값에 영영 팔아버리므로,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文記를 가지고 憑考하올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고광종

17. 光緒拾陸年 庚寅(1890) 拾壹月 拾捌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緊有用處 故右人處 錢文貳拾伍兩價用後 價報段 變通無路 故長兄買得是在 所謂鷹旨西邊員 稷種壹斗付 四標段 東鷹旨及小路 西康再雄田 南吳之曾田 北吳之(?)田 四標分明田 一庫 右人處 錢文貳拾伍兩 準數捧上後 永爲放賣(?)也 本文

記并許爲去乎 日後若有子與族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文記 卞正事

田主 玄始斗(喪 背着) 筆 玄仁官(着名) 證 玄永鶴(着名)

광서 16년 경인(1890년) 11월 18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긴급히 쓸 곳이 있어서 고로 錢文(돈) 25냥을 빌려 쓴 뒤에, 값을 갚기딴은 변동할 길이 없어 고로 큰 형님이 사 두었던 것인 소위 鷹旨 서쪽 가장자리 마리(員) 가장 종자 1말 부치기-사방의 표지딴은 동에 鷹旨 및 작은 길이고, 서에 강재응의 밭이고, 남에 오지증의 밭이고, 북에 오지(?)의 밭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 사람에게 돈 25냥에 準數(기준에 맞게 해야려) 捧上(받아들임, 受領)한 뒤에 영영 放賣하여 이 文記를 아울러 주므로 일후 만약 자손과 족속 가운데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文記를 가지고 바르게 구변할 일.

밭 주인 현시두, 글쓴이 현인관, 證人 현영학

18. 光緒十七年 辛卯(1891) 五月初十日 玄圭乘處 明文

右明文事段 緊有用次 錢文參十捌兩價用 而他無邊通 故矣買得田 所謂鷹旨員 粟種一斗付 四標段 東趙尙砧田 西小路 南高哥田 北韓(關二字)田 標分明田 庫 永永放賣是矣 本文記 并以許給爲去乎 日後更言之弊 此文憑考事

田主 自筆 吳尙晚(着名)

광서 17년 신묘(1891년) 5월 초10일 현규병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긴급히 쓸 게 있던 차 전문 38냥을 빌려졌는데 그러나 달리 변동(할 길)이 없어서 고로 내가 사 두었던 밭 소위 鷹旨 마리(員) 조 종자 1말 부치기-사방의 표지딴은 동에 조상침의 밭이고, 서에 작은 길이고, 남에 高哥의 밭이고, 북에 韓(두글자 빠짐)의 밭임-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영영 방매하되 이 문기를 아울러 許給(주어버림)하므로 일후 다시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글로 빙고하을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오상만

19. 光緒十七年 辛卯(1891) 十一月二十五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緊用之意 錢文參拾捌兩價用後 價報段 矣買田 所謂鷹旨員 粟種壹斗付 四標段 東趙甲遜田 西鷹旨童山 南高鶴(?)田 北韓致用及玄昌念田 標分明田 庫乙右當價 永永放賣爲辦 本文記 并以許給爲去乎 後若雜談之弊 則以此文記 告官卞正事

田主 自筆 玄圭東(着名)

광서 17년 신묘(1891년) 11월 25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긴급히 쓸 의향으로 돈 38냥을 빌려 쓴 뒤, 값을 갚기만은 내가 산 밭 소위 鷹旨 마리(員) 조 종자 1말 부치기-사방의 표지딴은 동에 조갑손의 밭이고, 서에 鷹旨 동산이고, 남에 고탕(?)의 밭이고, 북에 한치용과 현창님의 밭임-밭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으로 영영 팔아 버리며 이 文記를 아울러 許給(주어버림)하므로, 뒤에 만약 쓰잘데 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文記로써 관가에 알리어 바르게 구변하을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현규동

20. 光緒十八年 壬辰(1892) 四月 二十日 柳和順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錢文參拾陸兩貸用 而價報段 所謂斗於水北東邊員 皮牟柴斗付只 標 東趙元宗田 西高光仲田 南童山 南東邊朴春集田 四標分明田 壹庫乙 參拾陸兩價 永永放賣是遺 本文記段 他田并付 故不得許與 後若有雜談之弊 則此文券憑考事 田主 玄彭元(着名) 筆執 趙元白(喪 不着)

광서 18년 임진(1892년) 4월 20일 유화순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요긴히 쓸 소치로 돈 38냥을 빌려썼으나 값을 갚기만은 소위 斗於水(두려물) 동북쪽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7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조원종의 밭이고, 서에 고평중의 밭이고, 남에 동산이고, 남동쪽 가장자리에 박춘집의 밭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36냥 값에 영영 팔아버리고 이 문기만은 다른 밭에 아울러 붙이니 그러므로 물려 주지 못하며 후에 만약 쓰잘데 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文券으로 빙고할 일.

밭 주인 현행원, 붓 잡은 사람 조원백

21. 光緒拾玖年 癸巳(1893) 正月 二十五日 高啓全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急有用處 故右人處 錢文參拾肆兩貸用後 價報段 邊通無路 故矣相換 買得田 所謂學功田員 粟捌升付只田 四標段 東北右巨濟宅田 西宋啓豐田 南張佑悅田 四標分明田 一庫乙 同啓全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并以 日後改言 則持此明文 憑考事

田主 康相根(着名) 筆執 玄永吉(着名)

광서 19년 계사(1893년) 1월 25일 고계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급히 쓸 곳이 있어서 돈 34냥을 빌려쓴 뒤 값을 갚기만은 변통할 길이 없어서 고로 내가 相換(서로 바꾸어)하여 사 두었던 밭 소위 學功田 마리(員) 조 8되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만은 동북에 오른쪽 巨濟宅(고계

전)의 밭, 서에 송계풍의 밭, 남에 장우열의 밭-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제전에게 영영 팔아버리므로 이 문기판을 아우르니 일후 말을 고치면 즉 이 明文을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 강상근, 붓 잡은 사람 현영길

22. 光緒十九年 癸巳(1893) 三月 十六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流來田還退是在 所謂上畝南邊員 米牟壹斗參升付只 標 東玄仁木田 西趙先好田 南宋永斗 田及小路 北玄平元田 四標分明田 庫乙 同明完處 錢文參拾玖兩 準計捧上後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若更言之弊是去等 以此憑考事 田主 金仁伯(著名) 筆執 康漢斌(著名)

광서 19년 제사(1893년) 3월 16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나의(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밭을 還退(도로 무름, 매매를 취소함)한 것인 소위 上畝 남쪽 가장자리 마리(員) 쌀보리 1말 3되 부치기 -표지는 동에 현인수의 밭이고, 서에 조선희의 밭이고, 남에 송영두의 밭과 작은 길이고, 북에 현팽원의 밭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명완에게 돈 39냥을 準計(기준에 맞게 계산함) 捧上(受領)한 뒤 이 문기를 아울러 써 영영 팔아버리므로, 뒤에 만약 말을 고치는 폐단이 있거든 이것으로써 빙고할 일.

밭 주인 김인백, 붓을 잡은 사람 강한빈

23. 光緒十九年 癸巳(1893) 八月 十七日 金氏許 明文

右明文事段 土麻布伍拾尺採用後 (?)氏都路城旨南邊員 流來田 牟種貳斗付 一庫 標 東(闕字) 西(闕字) 南(闕字) 北(闕字) 四標分明田 庫乙 永永放賣爲矣 本文記段 他田并付 故不得許與 以此憑考事 田 高巨濟宅(著名) 筆執 康履鶴(著名)

광서 19년 제사(1893년) 8월 17일 김씨에게 밝히우는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土麻布(이 고장에서 나는 삼베) 50자를 採用(借用 빌려씀)한 뒤 (?)씨 都路城旨 남쪽 가장자리 마리(員)에 있는(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밭 보리 종자 2말 부치기 1곳-표지는 동에(글자가 비어 있음. 이하 같음), 서에, 남에, 북에-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영영 팔아버리되 이 문기판을 다른 밭에 아울러 부치니 고로 물려주지 못하므로 이로써 빙고할 일.

밭 고거제택, 붓 잡은 사람 강이학

24. 光緒十九年 癸巳(1893) 八月 十七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子用山於右人田中 而山價報給母路 故高巨濟宅前是在 都路城旨南邊 員 牟種貳斗付只 標 東(闕字) 西(闕字) 北(闕字) 四標分明田 一庫 以本文記一張 并以報給 以此憑考

田主 金氏(右手寸) 筆執 康履鶴(着名)

광서 19년 제사(1893년) 8월 17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단은 내 아들이 오른쪽 사람의 밭 가운데에 산(墓)을 썼으나 山價(묘지를 쓴 터값)를 갚을 길 없어 고로 高巨濟宅(고계전) 앞에 있던 것인 都路城旨 남쪽 가장자리 마리(員) 쌀보리 2말 부치기-표지는 동에(글자 비어 있음. 이하 같음), 서에, 남에, 북에-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이 문기 1장과 아울러 갚아 주니 이것으로써 빙고할 일.

밭 주인 김씨(오른손 마디), 붓을 잡은 강이학

25. 光緒二十年 甲午(1894) 正月 十五日 宋成桓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同人處 錢文壹百伍拾兩貨用後 價報段 變通無路 故矣所居家舍三間貳便及 基地麻子參斗付 四標段 東趙元周家坐田 西宋智殷家坐田 南小路 北趙成用家坐田 四標分明 而家舍基地 并以 右錢壹百伍拾兩價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載錄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明文 卞正事

家基主 趙源鍾(着名) 筆執 康昌鳳(着名)

광서 20년 갑오(1894년) 1월 15일 송성환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단은 내가 건요히 쓸 소치로 같은 사람에게 돈 150냥을 빌려온 뒤 값 갚기만은 변통할 길이 없어 고로 내가 살고 있는 집채 3간짜리 2채와 집터 삼세 3말 부치기-사방의 표지만은 동에 조원주의 집 坐田(位土)이고, 서에 송지은의 집 좌전이고, 남에 작은 길이고, 북에 조성용의 집 좌전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하며 집채와 집터를 아울러 오른쪽 돈 150냥 값에 영영 팔아버리되 이 문기만은 都許(재산 상속서)에 실어 쓰기에 고로 물려주지 못하므로 일후 만약 쓰잘데 없이 얘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明文을 가지고 바르게 구변할 일.

집터 주인 조원중, 붓 잡은 사람 강창봉

26. 光緒二十年 甲午(1894) 正月 二十三日 梁士國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緊有用處 故右人處 錢文參拾肆兩 準數攤上後 矣買得田 所謂學功田 員伊 粟種捌升付只 四標段 東北右巨濟宅田 西宋成豐田 南張佑悅田 標分明田 庫乙

同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二丈 并以許給爲去乎 後若有違期之弊 則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高啓全(着名) 筆執 高??(着名)

광서 20년 갑오(1894년) 정월 23일 양사국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내가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오른쪽 사람에게 돈 34냥을 準數(기준에 맞추어 계산함) 捧上(受領)한 뒤 내가 사 두었던 밭 소위 學功田 마리(員伊) 조 종자 8되 부치기-사방의 표지판은 동북에 오른쪽(右는 高의 잘못으로 보임) 巨濟宅 밭이고, 서에 송계풍의 밭이고, 남에 장우열의 밭-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사람에게 영영 팔아버리되 이 文記 2장을 아울러 주기에 후에 만약 여기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 고계전, 붓 잡은 사람 고(?)

27. 光緒二十年 甲午(1894) 正月 二十五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故右人處 錢文貳十捌兩貸用後 價報段 邊通無路 故矣買得田 所謂學功田員 粟種捌升付只田 四標 東北高巨濟宅田 西宋啓豐田 南張右悅田 四標分明田 壹庫乙 同明完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三章并以 許給是矣 日後雜談之弊 則持此明文 憑考事

田主 自筆 梁思國(着名)

광서 20년 갑오(1894년) 정월 25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내가 긴급하게 쓸 소치로 고로 오른쪽 사람에게 錢文(돈) 28냥을 빌려쓴 뒤, 값을 갚기만은 변통할 길이 없으므로 내가 사 두었던 밭 소위 學功田 마리(員伊) 조 종자 8되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판은 동북에 고계계역의 밭이고, 서에 송계풍의 밭이고, 남에 장우열의 밭-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장명완에게 영영 팔아버리므로, 이 문기만은 3장을 아울러 허급하되 일 후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으면 즉 이 명문을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양사국

28. 光緒二十年 甲午(1894) 三月 十五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有要用所致 故錢文貳拾捌兩陸錢 貸用後 報給無路 故所謂監伏其物 北邊員 稷種壹斗付只田 四標段 東玄平元田 西李啓奉田 南小路 北鄭智國田 四標分明田 壹庫乙 同右人處 文貳拾捌兩陸錢價 永永放賣爲乎 本文記段 置 并以 許給 日後若有雜談之弊 則止此文記 憑考事

田主 趙生爻(着名) 筆執 趙成龍(着名)

광서 20년 갑오(1894년) 3월 15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이 몸이 긴급하게 쓸 소치로 錢文(돈) 28냥 6전을 빌려 쓴 뒤, 갚아줄 길이 없어 고로 소위 監伏其物 북쪽 가장자리 마리(員) 기강 씨앗 1말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판은 동에 현령원의 밭이고, 서에 이계봉의 밭이고, 남에 작은 길이고, 북에 정지국의 밭-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오른쪽 사람에게 돈 28냥 6전 값으로 영영 팔아버리되, 이 문기판은 두고 아울러 허급하니 일후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즉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 조생돌, 붓을 잡은 사람 조성룡

29. 光緒二十年 甲午(1894) 三月 十七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 故錢文貳拾柒兩貨用後 邊通無路 故所謂監伏其物 北邊員稷種壹斗付只田 四標段 東玄平元田 四李啓奉田 南小路 北鄭智國田 四標分明田 庫乙 同右人處 文貳拾柒兩價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置 并以 許給 日後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玄召史(右手寸) 筆執 趙雲龍(着名)

광서 20년 갑오(1894년) 3월 17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이 몸이 긴급하게 쓸 소치로 고로 錢文(돈) 27냥을 빌려쓴 뒤 변통할 길이 없어 고로 소위 監伏其物 북쪽 가장자리 마리(員) 기강 씨앗 1말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판은 동에 현령원의 밭이고, 서에 이계봉의 밭이고, 남에 작은 길이고, 북에 정지국의 밭-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오른쪽 사람에게 돈 27냥 값으로 영영 팔아버리되, 이 문기판은 두고 아울러 허급하니 일후 만약 쓰잘데 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즉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 현소사, 붓 잡은 사람 조운용

30. 光緒二十年 甲午(1894) 正月 十七日 妻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身急有用處 所致 故矣身父任前買得田 所謂西泉木 東邊員伊 四標段 東康 尙伯田 西祖父田 南買者田 北童山 四標分明田 一庫乙 錢文拾陸兩準計捧上後 本文記段 俠作記在祿 不得許與爲去乎 日後若有更言之弊是去等 持此文 告官 卞正事

田主 妹妣 宋完千(着名) 筆主 康漢斌(着名)

광서 20년 갑오(1894년) 4월 17일 처남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이 몸이 긴급히 쓸 곳이 있는 소치로 고로 이 몸이 아버님에게 사 둔 밭 소위 西泉木 동쪽 가장자리 마리(員伊)-사방의 표지판은 동

에 강상백의 밭이고, 서에 할아버지 밭이고, 남에 사는 사람의 밭이고, 북에 동산
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錢文(돈) 16냥에 準計 擲上한 뒤, 이 문기 판은
俠作記(業作記를 가리키는 뜻함)에 실어 쓰므로 許與하지 못하기에, 일후 만약 다
시 말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글을 가지고 관에 알리어 바르게 관별할 일.

밭 주인 妹妣 송완천, 밭 잡은 사람 강한빈

31. 開國五百三年(當作504年) 乙未(1895) 五月 十八日 康召史處 明文

右明文案事段 矣要用所致 故右康召史處 錢文貳拾參兩貨用後 價報段 邊通無路 故矣
弟田 所謂高萬淑家基田 康召史及 松堂李始悅 同價買得田伍(?板) 永爲放賣爲去乎 日
後弟族屬中 雜談之弊 則持此明文 憑考事

兄 田主 李始旭(著名) 筆 梁士國(著名)

개국 503년(504년으로 되어야 함) 을미(1895년) 5월 18일 강소사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우는 글판은 내가 건요히 쓸 소치로 고로 오른쪽 강소사에게 돈 23
냥을 빌려 쓴 뒤, 값 값기판은 변동할 길이 없어 고로 내 아우 밭 소위 고만숙의 집
터 밭 및 강소사와 송당 이시열에게 같은 값으로 사 둔 밭 5판을 영영 팔아버리되
일후 아우 족속 가운데에서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 폐단이 있거든 즉 이 明文을 가
지고 빙고할 일.

형 밭 주인 이시욱, 밭을 잡은 양사국

32. 開國五百四年 乙未(1895) 十二月 初三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案事段 吾矣用處 右人處 錢文拾陸兩貨用後 價報段 報給無路 故吾矣流來是遺
所謂土音田員 一庫田 四標段 東溫平高令監宅田 西張用國田 南康昌(?鍾)田 北買者
田 標分明田 一庫 洛種伍斗付只 右人處 錢文拾陸價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都會
中(관독 불능)爲乎事

田主 吳仁建(喪 背着) 筆 康興松(著名)

개국 504년 을미(1895년) 12월 초3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판은 나에게 쓸 곳이 있어서 오른쪽 사람에게 돈 16냥을
빌려 쓴 뒤, 값 값기판은 값아 줄 길이 없어 고로 나의(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
위 土音田 마리(員) 1곳-사방의 표지판은 동에 온평 고영감(고계득)댁의 밭이고,
서에 장용국의 밭이고, 남에 강창(?종)의 밭이고, 북에 사는 사람의 밭임-표지가
분명한 밭 1곳(?락)중 5말 부치기를 오른쪽 사람에게 돈 16냥 값에 영영 팔아버리
되, 이 문기판은 都會 가운데 실어 쓰므로 許與하지 못할 일.

밭 주인 오인전, 붓을 잡은 사람 강홍송

33. 建陽二年 丁酉(1897) 六月 十四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急有用處 故錢文參拾貳佰用後 價報段 邊通無路 流內田 所謂長童山 北邊員 牟四斗付只田 四標段 東買坐田 西宋庚奉田 南宋重然田 北鄭希準田 四標分明 田 一庫乙 右人處 錢文參拾貳兩價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 并以 日後雜談持弊是去等 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自筆 康尙伯(着名)

건양 2년 정유(1897년) 6월 14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우는 일편은 내가 진요히 쓸 곳이 있어서 고로 돈 32(냥)을 빌려 쓴 뒤, 값 갚기만은 변통할 길이 없어(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밭 소위 長童山 북쪽 가장자리 마리(員) 보리 4말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는 동에 사는 사람의 밭이고, 서에 송경봉의 밭이고, 남에 송중연의 밭이고, 북에 정회준의 밭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 사람에게 돈 32냥 값에 영영 팔아버리기에 이 문기를 아울러 (주니) 일후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강상백

33. 光武二年 戊戌(1898) 十二月 二十三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要有用處 故錢文陸 拾陸兩賃用後 價報段 報給無路 故矣嫡母買得田 所謂里內 東邊員伊 皮牟肆斗付只田 標 東高巨濟田 西小路 南小路 北康漢連田 四標 分明田 壹庫乙 同右人處 錢文陸拾陸兩價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若雜談之弊 是去等 持此文記 告官 憑考事

田主 趙禮云(着名) 筆主 康漢峻(着名)

광무 2년 무술(1898년) 12월 23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편은 내가 진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고로 돈 66냥을 빌려 쓴 뒤, 값 갚기는 갚아줄 길이 없어 고로 내 嫡母에게서 사 두었던 밭 소위 里內 동쪽 가장자리 마리(員伊) 걸보리 4말 부치기 밭-표지는 동에 고거계(고계득)의 밭이고, 서에 작은 길이고, 남에 작은 길이고, 북에 강한연의 밭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오른쪽 사람에게 돈 66냥 값에 이 문기와 아울러 영영 팔아버리되, 뒤에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가에 알리어 빙고할 일.

밭 주인 조희운, 붓을 잡은 사람 강한준

35. 光武三年 己亥(1899) 七月 二十八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用處 故錢文捌拾捌兩貨用後 價報段 邊通無路 故矣祖上買得田 所謂上畚 東邊員 皮牟四斗付只田 標段 東玄永島田 西北張世能門後家坐田 南小路 四表分明田 一庫乙 右人處 錢捌拾捌兩價 永永放賣爲去乎 後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憑考事

自筆 田主 玄昌勛(着名)

광무 3년 기해(1899년) 7월 28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쓸 곳이 있어서 고로 돈 88냥을 빌려쓴 뒤 값 값기딴은 변동할 길이 없어 고로 내 조상이 사 두었던 밭 소위 上畚 동쪽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4말 부치기-사방의 표지딴은 동에 현영도의 밭이고, 서북에 장세능의 문 뒤 집안 坐田(묘소나 제사 또는 시체를 돌보는 데 필요한 경비를 대기 위한 밭)이고, 남에 작은 길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 사람에게 돈 88냥 값으로 영영 팔아버리되, 뒤에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스스로 쓴 밭 주인 현창훈

36. 光武三年 己亥(1899) 八月 十八日 妹夫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本以八字崎嶇之致 早失父母 東西支離 生計無策 故矣祖上給是在矣父家基田 上畚童山 東邊員 米牟壹斗付只 標 東北康成杓家坐園田 南康漢吉田 西買者家坐田 四標分明田 壹庫 右人處 錢文壹佰參拾兩價 田內藪木與青竹 并以 本文記一張亦并給 永爲放賣爲去乎 後若有族屬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妻孀 康漢(?梯)(着名) 爭證 玄仁五(着名)

광무 3년 기해(1899년) 8월 19일 매부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우는 일딴은 내가 본래 기구한 소치로써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동서로 支離하여 생계 꾸릴 대책이 없어 고로 내 조상이 갓급해 준 것인 내 아버지 집터 밭 上畚 동산 동쪽 가장자리 마리(員) 쌀보리 1말 부치기-표지는 동북에 강성표 집의 坐園田이고, 남에 강한길의 밭이고, 서에 사는 사람의 집안 坐田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 사람에게 돈 130냥 값에, 밭 가운데 있는 뽕나무 숲(수목)과 푸른 대들을 아울러서, 이 문기 1장을 또한 함께 주어 영영 팔아버리되, 뒤에 만약 족속 가운데에 쓰잘데없는 말을 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 처남 강한(?), 다룰 때의 증인될 사람 현인오

37. 光緒四年 庚子(1900) 十月 二十三日 張明完處 家基 明文

右明文事段 矣緊有用處 故錢文 佰伍兩價用後 價報段 邊通無路 故矣養祖母掃祭田 所謂上番東山 南邊員 草家三間壹鞭及 基地米牟壹斗五升付 標 東趙源國家坐田 西宋 智恩家坐田 南小路 北康漢鳳家坐田 四標分明田 基地壹庫 家舍一鞭 并以 同明完處 價用文參佰五兩價 本文記一張及樹竹并以 永永放賣後 若有子孫族屬中 雜談更言之弊 是去等 持此文券 憑考卜正事

家舍基地主 祖母康氏(右手寸) 代孫 宋景奉(着名) 筆執 康漢峻(着名)

광무 4년 경자(1900년) 10월 23일 장명완에게 집터를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고로 돈 305냥을 빌려쓴 뒤, 값 갚기딴은 변통할 길이 없어서 고로 내가 봉양하는 할머니 掃祭田 소위 上番 동산 남쪽 가장자리 마리(員) 초가집 3간짜리 1채와 집터 쌀 보리 1말 5되 부치기-표지는 동에 초원국의 집안 坐田이고, 서에 송지은의 집안 좌전이고, 남에 작은 길이고, 북에 강한봉의 집안 좌전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집터 1곳과 집 1채를 아울러 같은 장명완에게 빌려쓴 돈 305냥 값에 이 문기 1장 및 심어 둔 매나무와 아울러서 함께 영영 팔아버리므로 뒤에 만약 자손 족속 가운데에서 쓰잘데 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文券을 가지고 빙고하여 바르게 판별할 일.

집채와 집터의 주인 할머니 강씨(오른 손 마디), 대리하는 손자 송경봉, 붓 잡은 사람 강한준

38. 癸卯(1903) 二月 二十八日 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急有用處 故右人處 錢文貳拾伍兩貸後 報段 邊通無(路)故所謂矣父主 買得田 祭夕童山 東北邊員 皮牟伍斗付只田 四標段 東矣兄田 西韓有京田 南康甲生田 北康青吉田 四標分明田 壹庫 不得許給矣 本文記段 兄田并付 故右人處 永永防買爲去乎 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康履生(着名) 筆 康昌松(着名)

推 限來四月望間 若不還 則永爲執耕(?次)

계묘(1903년) 2월 28일(글자 없음)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급히 쓸 곳이 있어서 고로 오른쪽 사람에게 돈 25냥을 빌린 뒤(돈을) 갚기딴은 변통할(길이) 없어서 고로 소위 내 아버님이 사 둔 밭인 祭夕 동산 동북쪽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5말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딴은 동에 내 형의 밭이고, 서에 한유경의 밭이고, 남에 강갑생의 밭이고, 북에 강청길의 밭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물려 주지 못하되, 본 문기딴을 형 밭에 아울러 붙이며 고로 오른쪽 사람에게 영영 팔아버리기에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 강이생, 붓(잡은 사람) 강창송

덧붙임: 오는 4월 보름까지 만약 돌리지 못하면 즉 영원히 執耕할 터.

39. 光武七年 癸卯(1903) 四月 初一日 梁達洪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故右人處 錢文肆拾兩貸用後 價報段 矣妻父衿給田 所謂斗嚴水 東邊員 彼牟伍斗付只田 四標段 東西南趙源宗田 西柳和甸田 標分明田 庫乙 同人處 錢文肆拾兩 永爲放賣是遺 本文記段 他田并付 故不得許給爲去乎 若有誰談幣 則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自筆 朴春集(著名)

광무 7년 계묘(1903년) 4월 초1일 양달홍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긴급히 쓸 소치로 고로 오른쪽 사람에게 돈 40냥을 빌려온 뒤 값을 갚기만은 내 妻父(가시아방)가 깃급(衿給)채산을 물려준(한 밭인) 소위 斗嚴水 동쪽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5말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만은 동북남에 조원종의 밭이고, 서에 유화순의 밭임-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사람에게 돈 40냥으로 영원히 팔아버리고 이 문기만을 다른 밭에 아울러 붙이니 고로 물려 주지 못하기에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이며 스스로 쓴 박춘집

40. 光武柒年 癸卯(1903) 五月 二十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緊有用處 矣父買得田 所謂祭席東山 東邊員 皮牟肆斗付只 四標段 東康履善田 西康履洙田 南康甲生田 北康履道田 標分明是遺 價報段 錢文肆拾柒兩準數捧上後 右人處 永爲放賣是矣 本文段 他田并付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記 告官 卞正事

田主 康履弘(著名) 筆 高君淸(著名)

광무 7년 계묘(1903년) 5월 20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만은 긴급히 쓸 곳이 있어서 내 아버지가 사 둔 밭 소위 祭席 동산 동쪽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4말 부치기-사방의 표지만은 동에 강이선의 밭이고, 서에 강이수의 밭이고, 남에 강갑생의 밭이고, 북에 강이도의 밭임-표지 분명하고 값을 갚기만은 돈 47냥을 헤아려 받은 뒤 오른쪽 사람에게 영영 팔아버리되 이 문기만을 다른 밭에 아울러 붙이여 고로 물려 주지 못하므로 일후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가에 알리어 바르게 구별할 일.

밭 주인 강이홍, 붓(잡은 사람) 고군청

41. 光武七年 癸卯(1903) 八月 十六日 張世俊處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用處 故祖上流來田 所謂荒穰下員 下池田 稷種壹斗付只 四標段 東長城 西鄰知國家坐田 南宋平柱家坐田 北小路 標分明 而價本段 錢文參拾五兩準計捧上後 永爲放賣爲去乎 本文段 都會中 并付 故不得許給 而後若有雜談之弊 則以此文記憑考事

自筆 田 高稚玉(喪 背着)

광무 7년 계묘(1903년) 8월 16일 장세준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단은 절박하게 쓸 곳이 있어서 고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밭인 소위 荒穰下(황루알) 마리(員) 下池田 기장 종자 1말 부치기-사방의 표지단은 동에 長城이고, 서에 정지국의 집안 坐田(位田)이고, 남에 송평주의 집안 좌전이고, 북에 작은 길임-표지가 분명하고, 값판은 돈 35냥을 헤아려 받은 뒤 영영 팔아버리기에 이 文단은 都會 가운데에 아울러 붙이어 고로 물려 주지 못하며, 뒤에 만약 쓰잘데없는 얘기하는 폐단이 있거든 즉 이 문기로써 빙고할 일.

스스로 쓴 밭(주인) 고치옥

42. 光武八年(1904) 十一月 十六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緊有用處 故所謂毛乙祚員 流來田 稷種 上下 兩庫 壹斗五升付只 四標段 東鄰已先田 西北康汗象田 南小路及康已完田 標分明 而價本段 錢文貳佰捌拾兩準計捧上後 本文記段 都許中在錄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弊 則以此文記憑考事

自筆 田主 高稚玉(喪 背着)

광무 8년(1904년) 11월 16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단은 긴급히 쓸 곳이 있어서 고로 소위 모을조 마리(員)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밭 기장 종자 상하 2곳 1말 5되 부치기-사방의 표지단은 동에 정이선의 밭이고 서북에 강한녹의 밭이고 남에 작은 길과 강이완의 밭임-표지가 분명하고, 값판은 전문 140냥에 헤아려 받은 뒤 이 문기판은 도회 가운데 실어 쓰므로 고로 허급하지 못하며, 일후 잡담하는 폐단이 있으면 즉 이 문기로써 빙고할 일.

스스로 쓴 밭 주인 고치옥

43. 光武九年 乙巳(1905) 正月 十三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切有用處 故矣父主衿下田 所謂石水童山 南邊員 皮牟參斗付只田 四標段 東北小路及康以根田 西康以完田 南宋之恩家坐田 四標分明田 壹庫乙 同右人前 錢文肆拾陸兩準計捧上後 本文壹張并以 永爲放賣爲去乎 日後更有雜談之弊 則以此文記憑考事

田主 金瀛秋(著名) 筆主 康漢吉(著名)

광무 9년 을사(1905년) 1월 13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절박하게 쓸 게 있어서 고로 내 아버님물려 주신 밭인 石水 동산 남쪽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3말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딴은 동북에 작은 길이며 강이근의 밭이고, 서에 강이완의 밭이고, 남에 송지은의 집안 坐田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오른쪽 사람에게 돈 46냥을 헤아려 받은 뒤 이 文 1장과 아울러 영영 팔아버리기에 일후 다시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 김영추, 붓 주인 강한길

44. 光武十年 丙午(1906) 二月 初三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切有用處 故矣父主買得田 所謂府巨水員 皮牟參斗伍(升)付只田 四標東高基連田 南小路及府巨水 西康化仲田 北小路 四標分明田 壹庫乙 同右人處 錢文拾伍兩價 永爲放賣是矣 本文記段 他田并付 故不得許給爲去乎 後若有雜談之弊 則以此文記憑考事

田主 朴君三(著名) 筆主 康漢吉(著名)

광무 10년 병오(1906년) 2월 초3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절박하게 쓸 곳이 있어서 고로 내 아버님이 사둔 밭 소위 府巨水 마리(員) 걸보리 3말 5(되)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딴은 동에 고기연의 밭이고, 남에 작은 길과 府巨水이고, 서에 강중화의 밭이고, 북에 작은 길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오른쪽 사람에게 돈 15냥 값으로 영영 팔아버리되 이 문기딴을 다른 밭에 아울러 붙이어 고로 물려 주지 못하므로 뒤에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로써 빙고할 일.

밭 주인 박군삼, 붓 주인 강한길

45. 隆熙二年 戊申(1908) 二月 初七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緊有用處 故右人處 錢貳佰兩準計捧上後 矣父買得衿給田 所謂里東洞員伊 粟種參升付 四標段 東北小路 西宋萬平家坐田 南康化宗田 標分明田 一庫乙 同

明完處 錢文貳佰兩價 永爲放賣爲去乎 本文記并以爲乎尼 後若有違期之弊 則持此文記 憑考事

自筆 田主 康鳳根(朱印) 溫平 黑印有廓

융희 2년 무신(1908년) 2월 초2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긴급히 쓸 곳이 있어서 고로 오른쪽 사람에게 돈 2백냥을 헤아려 받은 뒤 내 아버지가 사서 물려 준 밭 소위 마을 東洞 마리(員伊) 조 종자 3되 부치기-사방의 표지딴은 동북에 작은 길이고, 서에 송만평의 집 안 坐田이고, 남에 강화종의 밭임-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명완에게 돈 2백냥 값에 영영 팔아버리기에 이 문기를 아울러 하오니 뒤에 만약 기약을 어기는 폐단이 있으면 즉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스스로 쓴 밭 주인 강봉근

46. 隆熙貳年 戊申(1908) 伍月 初壹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故矣父主掃祭田 所謂里內上畚童山 西邊員 皮牟柒斗付只田 肆標段 東南西小路 北柳光順家坐田 標分明田 庫乙 同右人處 錢文貳佰陸什兩準計 捧上後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會中載錄 故不得許給爲去乎 後若有雜談之弊 則以此文記 憑考施行事

田主 宋禧完(着名) 筆執 宋禧洙(喪 背着) 溫平墨印有廓

융희 2년 무신(1908년) 5월 초1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딴은 내가 긴급히 쓸 소치로 고로 내 아버지 掃祭田인 소위 里內 上畚 동산 서쪽 가장자리 마리(員) 걸보리 7말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딴은 동남서에 작은 길이고, 북에 유광순의 집안 좌전임-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오른쪽 사람에게 돈 260냥을 헤아려 받은 뒤 영영 팔아버리되 이 문기딴은 都會 가운데에 실어 써서 고로 물려 주지 못하므로 뒤에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으면 즉 이 문기를 가지고 憑考를 시행할 일.

밭 주인 송희완, 붓 잡은 사람 송희수

47. 隆熙二年 戊申(1908) 八月 二十二日 張世勛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故矣買得田 所謂於拒田 西邊員 稷種參升付只田 四標段 東張明根田 西古城洪(關字)田 南古城洪萬平田 北買坐人田 四標分明田 壹庫 同世勛處 決價 文參拾伍兩 準計捧上後 永爲放賣是矣 本文記段 都會中 載錄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若有違期之弊 則以此文記 憑考事

田主 康啓辰(朱印) 筆 舍弟 康啓浩(指朱印)

융희 2년 무신(1908년) 8월 22일 장세훈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판은 내가 긴요히 쓸 소치로 고로 내가 사둔 밭인 소위 於 拒田 서쪽 가장자리 마리(員) 기장 종자 3되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판은 동에 장 명근의 밭이고, 서에 고성리에 사는 홍(글자 없음)의 밭이고, 남에 고성리에 사는 홍만평의 밭이고, 북에 사는 사람의 집안 좌전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세훈에게 결정된 값 돈 35냥을 헤아려 받은 뒤 영영 팔아버리되, 이 문기만은 都會 가운데에 실어 써서 고로 물려 주지 못하기에 일후 만약 기억을 어기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로써 빙고할 일.

밭 주인 강제진, 붓(잡은 사람) 동생 강제호

48. 隆熙三年 乙酉(1909) 三月 十五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矣急有用處 故右人處 錢文貳佰兩貸用後 報給段 父母衿給田 所謂里內 北邊員 粟種三升付只 四標段 東小路 西宋萬彭家坐田 南康化重田 北小路 標分明田 一庫乙 右人處 此錢價 永爲放賣 本文段 并以許給 日後以此文記 憑考事 自筆 田主 康鳳根(朱印)

융희 3년 무신(19089) 3월 15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판은 내가 급히 쓸 곳이 있어서 고로 오른쪽 사람에게 돈 2백냥을 빌려쓴 뒤 갚아 주기만은 부모가 물려 준 밭인 소위 里內 북쪽 가장자리 마 리(員) 조 종자 3되 부치기-사방의 표지판은 동에 작은 길이고, 서에 송만평의 집안 좌전이고, 남에 강화중의 밭이고, 북에 작은 길임-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오른쪽 사람에게 이 돈 값으로 영영 팔아버리고 이 문기를 아울러 주니 일후 이 문기로써 빙고할 일.

스스로 쓴 밭 주인 강봉근

49. 隆熙四年 庚戌(1910) 三月 初十日 張明完處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用處 故矣買得田 所謂斗巖水 東邊員 皮牟五斗付只田 四標段 東北 南趙源宗田 西買坐田 四標分明田 壹庫乙 同右人前 錢文貳拾伍兩乙 準計擲上後 本文 記 并以 永永放賣是矣 後若有雜談之弊 則以此文記 憑考施行事

自筆 田主 梁達洪(著名)

융희 4년 경술(1910년) 3월 초10일 장명완에게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밝히운다는 일판은 절박히 쓸 곳이 있어서 고로 내가 사 두었던 밭인 소 위 斗巖水 동쪽 가장자리 마리(員) 길보리 5말 부치기 밭-사방의 표지판은 동북남

에 조원종의 밭이고, 서에 사는 사람의 좌전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오른쪽 사람에게 돈 25냥을 헤아려 받은 뒤에 이 문기를 아울러서 영영 팔아버리되 뒤에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으면 즉 이 문기로써 憑考를 시행할 일.
스스로 쓴 밭 주인 양달홍

50. 光緒四年 戊寅(1878) 十二月 二十七日 弟處 相換記

右相換記事段 家坐西邊員 皮牟五升付 表 東家坐田 南漢(?永)家坐田 買者門路 西北買者家坐田 四表分明田 買者後田 南隅 皮牟伍升付只 代捧後 永永相換爲去乎 日後相考施行事

田主 長兄(着名) 筆執 弟 履鶴(着名)

광서 4년 무인(1878년) 12월 27일 아우에게 서로 바꾸는 文記

오른쪽에 서로 바꾼다는 문기의 일만은 집안 坐田 서쪽 가장자리 마리(員) 길보리 5되 부치기-표시는 동에 집안 좌전이고, 남에 한(?영)의 집안 좌전이며 사는 사람의 門路이고, 서북에 사는 사람의 집안 좌전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밭(을) 사는 사람의 後田 남쪽 모퉁이에 길보리 5되 부치기(밭으로) 대신 받은 뒤 영영 서로 바꾸되 일후 相考를 시행할 일.

밭 주인 큰 형, 붓 잡은 사람 아우 이학

51. 光武二年 戊戌(1898) 十月 初二日 長兄處 相換記

右相換之文段 矣季子昌規 勢當各居之境 家基無處 故矣兄處 矣買得之田 所謂上畚 東邊員 皮牟肆斗付 東小路 西水桶 南小路及玄彭元田 北玄永鳥田 標分明田 一庫 兄處 所當處家基 一庫 相換後 本文記二張并以 永爲相換放賣爲去乎 後若有雜談 持此文記 憑考事

自筆 相換主 弟(着名)

광무 2년 무술(1898년) 10월 초2일 큰 형에게 서로 바꾸는 文記

오른쪽에 서로 바꾸는 문기만은 내 작은 아들 창규의 형세가 서로 각각 (따로) 살아야 할 지경에 당하였으나 집터가 없는 처지여서 고로 내 형에게 내가 사둔 밭인 소위 上畚 동쪽 가장자리 마리(員) 길보리 4말 부치기-동에 작은 길이고, 서에 물통이고, 남에 작은 길과 현쟁원의 밭이고, 북에 현영조의 밭임-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형에게 마땅한 곳의 집터 1곳과 서로 바꾼 뒤 이 문기 2장을 아울러서 영영 서로 바꾸어 팔아버리되 후에 만약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갖고 빙고할 일.

스스로 쓴 相換主(서로 바꾸는 주인) 아우

52. 光武八年 甲辰(1904) 十一月 十四日 張明完處 相換明文

右相換明文事段 吾矣成置家基次 矣買得田 所謂斗嚴水 皮牟柴斗付 四標段 東趙源 鍾田 西北高老仲田 南童山南東邊朴春集田 標分明田 壹庫乙 同右人前 所謂上畚西南 邊員 米牟壹斗付 標 東李元春家坐田 分明田 壹庫乙 又錢參拾貳兩加添後 本文券并以 永爲相換明文(?)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券 憑考施行事
相換 田主 柳光淳 筆主 康漢俊

광무 8년 갑진(1904년) 11월 14일 장명완에게 서로 바꿈을 밝히우는 글

오른쪽에 서로 바꾸는 문기의 일단은 나의 집터로 이루어 둔 내가 산 밭 소위 斗嚴水 걸보리 7말 부치기-사방의 표지단은 동에 조원종의 밭이고, 서북에 고노중의 밭이고, 남에 동산 남동쪽 가장자리에 박춘집의 밭임-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같은 오른쪽 사람 앞에 소위 上畚 서남쪽 가장자리 마리(員) 쌀보리 1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이원춘의 집안 좌전-분명한 밭 1곳과 또 돈 32냥을 더한 뒤 이 文券과 아울러 영영 서로 바꾸되, 만약 잡담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권을 가지고 빙고를 시행할 일.

서로 바꾸는 밭 주인 유광순, 붓 주인 강한준

53. 乙酉(1885) 八月 十八日 金仁百處 許給文

右許給文事段 右人之祖生時 所賣田庫中 上畚南邊 壹庫 姑未還退之際 右人作家 居生至于今 全無一言半辭 故据致右人 推尋田價 則右人母子 哀乞太甚 生涯可謂不如死地是如 累累哀乞 故觀其形狀所言 如是勢 不得已 右人祖父所賣田 家基田 皮牟參斗付 只 壹庫 以厚恩之情 許給爲去乎 田庫標 東(?)趙) 戊亥家基田 南小路 西宋永斗田 北玄彭元田 四標分明 許給是遺 本文記段 置并以出給 日後憑考事
許給田主 高雲弼(喪 不着) 筆 康明淑(著名)

을유(1885년) 8월 18일 김백인에게 許給(거저 주는) 文

오른쪽에 허급하여 준다는 글의 일단은 오른쪽 사람의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팔았던 밭 (여러) 곳 가운데에서 上畚 남쪽 가장자리 1곳은 아직 도로 무르지도 아니하였는데, 오른쪽 사람이 집을 지어 살아가기가 오늘까지 이르렀으나 전혀 한마디 반소리도 없었던 고로, 오른쪽 사람을 그대로 두고(내쫓지 않고) 밭 값을 찾아내려고 하였던 즉, 오른쪽 사람의 母자가 애걸함이 태심하고 생애가 가히 死地만 같지 못하다고 말하며 누누히 애걸하니, 고로 그 형상과 말하는 바를 보아하니 이 형세와 같으므로 부득이 오른쪽 사람의 할아버지가 팔았던 바의 밭인 집터 밭 걸보리 3말 부치기 1곳을 厚恩의 정리로 허급하여 주되-밭 1곳의 표지는 동에 조무들의 집터 밭

이고 남에 작은 길이고 서에 송영두의 밭이고 북에 현평원의 밭임—사방의 표지가
분명한 곳을 허급하고 이 문기판은 두고 아울러 내어 주니 일후 빙고할 일.

허급하여 주는 밭 주인 고운필, 붓 강명숙

54. 建陽二年(1897) 二月初十日 康氏處 可考明文

右可考明文事段 惟我先親時 高春悌處 錢兩推給矣 右春悌爲人者 蕩賣家產之際 家
墓田前 價價壹百兩伍錢 六人處 辦報矣 此田乙 同康氏 買得之意爲言 則六人處 各樣
決金 買得之際 惟我亦 其他人之例 錢文玖兩 準數捧上後 此田乙 放賣是矣 四標在載
他人田 一體以此考準是遺 標分明田乙 同康氏處 玖兩價 永買爲去乎 後若有違期之弊
持此文記 憑考事

田主 金昇秋(着名) 筆執 高(??)

건양 2년(1897년) 2월 초10일 강씨에게 可考 明文

오른쪽에 可考(참고할 만한 것)을 밝히우는 일판은, 생각하건데 내 先親 때에 고
춘계에게 돈을 推給(찾아서 지급하여 줌 : 여기서는 찾아 빌려 줌을 의미)함에 오
른쪽 춘계라는 사람이 집 재산을 멋대로 팔아버릴 적에 집터 밭 앞에(집터 밭을) 빌
린 돈 1백냥 5전을 6인에게 변상하여 갚되, 이 밭을 같은 강씨가 사 두겠다고 말하
니 그런 즉 6인에게 각양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사 들 즈음, 저이기 나 역시 그 다른
사람들의 예대로 돈 9냥을 헤아려 받은 뒤 이 밭을 팔아버리되 사방의 표지를 다른
사람의 밭에 실어 써서 일체를 이것으로써 考準(想考하고 準計함)하고, 표지가 분
명한 밭 1곳을 같은 강씨에게 9냥 값으로 영영 팔아버리되, 뒤에 만약 기약을 어기
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빙고할 일.

밭 주인 김승추, 붓 잡은 사람 고(??)

(이 내용은 고춘계가 김승추의 아버지 등 6인으로부터 돈 1백냥 5전을 빌려 썼었
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자 자기 소유의 재산을 내어 주게 되었는데, 이때 그 재산
들을 강씨라는 여인이 사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김승추는 그의 선친이 밭을 9냥 값
으로 받게 되는 밭을 그 여인에게 팔아버리면서 이 참고할 문기를 작성한 것이다)

55. 丁亥(1887) 閏四月 十九日 處 拮据文

右拮据文事段 溫平 西川目員 田價拾兩捧上 日後更言之弊是去等 持此文記 相考事
同日 又壹兩捧上(着名)

拮据主 李時連(着名)

정해년(1887년으로 추정) 윤 4월 19일 ()에게 拮据하는 글

오른쪽 拮据(A가 B로부터 받을 돈을 C에게 넘겨 주는 일)하는 글의 일판은 온평

리 西川目 마리(員) 밭 값 십냥을 받으니, 일후 말을 바꾸는 폐단이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상고할 일

같은 날 또 1냥을 받음

질거하는 사람 이시연

56. 歲己巳(1869) 十二月 二十五日 都許文

右都許文事段 嗚呼 年當七旬 棄世不遠 故吾之生前 買得田 庫乙 吾之夫妻 掃條成置是如可 餘在田 庫乙 子女等處 略略分排西齊

1. 吾之掃條 鷹旨東員 皮牟捌斗付 標 東趙達富田 又長南員 皮牟五斗付 標 東康恒三田 標分明 貳庫乙 成置是齊

2. 妻掃條 里內石手童山東南員 皮牟六斗付 標 東小路 標分明田 壹庫 成置是齊

3. 長子世役下 草三間壹鞭外 壹間基地 皮牟貳斗付 標 趙元國田 里內員衿下田 皮牟四斗付 標 東宋萬弘門路 長童山員 皮牟七斗付 標 東康漢鳳田 又達如水員 皮牟七斗付 標 東金永秋田 又同員 皮牟三斗付 標 東吾之田 又加黃伊員 連墻 貳庫 皮牟九斗付 標 東高殷三田 又同員 皮牟四斗付 標 小路 又同員 皮牟之斗付 標 東高熙贊田 又西近槐員 皮牟四斗付 標 東小路 又馬午羅員 連墻 貳庫 稷種壹斗貳升付 標 東高熙璜田 又毛南槐員 稷種參升付 標 東小路

4. 次子世勛下 草三間壹鞭外 二間基地 皮牟六斗付 標 東小路 又長南員 皮牟四斗付 標 東康恒三田 又鷹旨員 皮牟七斗付 標 東小路 又斗巖水員 皮牟四斗付 標 東趙元鍾田 又達如水員 皮牟四斗付 標 東吾之田 又廣飛來員 皮牟五斗付 標 東長城 又長童山員 皮牟貳斗付 標 東康漢鳳田 又加黃伊員 連 四庫 皮牟拾壹斗付 標 東小路 又脈山谷員 皮牟五斗付 標 東小路 又順月員 連墻 三庫 稷種壹斗五升付 標 東鄭起先田 里內松木田員 皮牟四斗付 標 東小路

5. 女息下 上畚員 皮牟四斗付 標 東小路 又鷹旨東員 皮牟五斗付 標 東趙達富田 又毛雲注員 連墻 四庫 稷種四升付 標 東康聖根田

6. 長孫春方下 斗巖水員 皮牟六斗付 標 東吾之田

7. 外孫玄如根下 西近槐員 皮牟五斗付 標 東鄭斗化田

8. 次孫春玉下 加黃伊員 皮牟三斗付

9. 次孫(闕)下 鷹旨東員 皮牟六斗付 標 東矣主掃條田

세 기사(1869년) 12월 25일 都許文

오른쪽 도허문(모든 상속자에게 재산을 물려 주는 글)의 일편은, 오호라, 나이가 칠순에 해당하여 세상을 버릴 날이 멀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을 적에 사 두었던 밭 (여러) 곳을 나의 夫妻(나와 나의 아내) 掃條(소분하는 조건: 여기서는 掃墳하고 제사하는 데에 쓸 조건)로 마련하여 두다가 남아 있는 밭 여러 군데

(곳)을 자녀들에게 대략 나누어 주는 것이저(것이다).

1. 나의 掃條는 鷹旨 동쪽 마리(員) 걸보리 8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조달부의 발임-그리고 長南 마리(員) 걸보리 5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강항삼의 발-표지가 분명한 발 2곳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저.

2. 아내의 소조는 里內 石手 동산 동남쪽 마리(員) 걸보리 6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표지가 분명한 발 1곳을 마련하는 두는 것이저.

3. 큰 아들 세준에게 내림: 초가 3간 1채외에 1간 집터 걸보리 2말 부치기-표지는 조원국의 발, 里內 마리(員)의 물려내린 발(물려오는 발) 걸보리 4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송만홍의 문 길, 長童山 마리(員)의 걸보리 7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김영추의 발, 또 같은 마리의 걸보리 3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나의 발, 또 加黃伊 마리의 담이 이어진 2곳 걸보리 9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고은삼의 발, 또 같은 마리의 걸보리 4말 부치기-표지는 작은 길, 또 같은 마리의 걸보리 6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고회찬의 발, 또 西近槐 마리의 皮牟 4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 또 馬午羅 마리의 담이 이어진 2곳 기장 종자 1말 2되 부치기-표지는 동에 고회황의 발, 또 毛南槐 마리의 기장 종자 3되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

4. 셋아들 세훈에게 내림: 초가 3간 1채외에 2간의 집터 걸보리 6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 또 長南 마리의 걸보리 4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강항삼의 터, 또 鷹旨 마리의 걸보리 7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조원종의 발, 또 達如水 마리의 걸보리 5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나의 발, 또 廣빌래 마리의 걸보리 5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長城, 또 長童山 마리의 걸보리 2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강한봉의 발, 또 加黃伊 마리의 담이 이어진 4곳 걸보리 11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 또 脈山谷 마리의 걸보리 5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 또 順月 마리의 담이 이어진 3곳 기장 종자 1말 5되 부치기-표지는 동에 정기선의 발, 里內 소나무 발 마리의 걸보리 4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

5. 딸 자식에게 내림: 上畚 마리의 걸보리 4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작은 길, 또 鷹旨 동쪽 마리의 걸보리 5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조달부의 발임, 또 毛雲注 마리의 담이 이어진 4곳 기장 종자 4되 부치기-표지는 동에 강성근의 발.

6. 큰 손자인 춘방에게 내림: 斗巖水 마리의 걸보리 6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나의 발.

7. 외손자 현여근에게 내림: 西近槐 마리의 걸보리 5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정두화의 발.

8. 손자인 춘옥에게 내림: 加黃伊 마리의 걸보리 3말 부치기.

9. 셋 손자()에게 내림: 鷹旨 동쪽 마리의 걸보리 6말 부치기-표지는 동에 나의 임 掃條田.

57. 己巳(1869) 十二月 二十五日 長孫春方處 葉作記
右葉作記事段 矣買得田 所謂斗嚴水員 皮牟六斗付 標 東吾之田 標分明田 壹庫 衿
給印
財主 自筆 祖父

기사(1869년) 12월 25일 큰 손자 춘방에게 주는 葉作記
오른쪽에 엽작기의 일단은 내가 사 두었던 밭 소위 斗嚴水 마리의 길보리 6말 부
치기-표지는 동에 나의 밭임-표지가 분명한 밭 1곳을 끼쳐 줌(遺與함, 물려줌).
끝.
財主이며 스스로 쓴 할아버지.

58. 己巳(1869) 十二月 二十五日 次孫春玉處 葉作記
右葉作記事段 矣買得田 所謂加黃伊員 皮牟參斗付 標 東康太奉田 標分明 壹庫 衿
給印
財主 自筆 祖父

기사(1869년) 12월 25일 셋 손자 춘옥에게 주는 엽작기
오른쪽에 엽작기의 일단은 내가 사 두었던 밭 소위 加黃伊 마리 길보리 3말 부치
기-표지는 동에 강태봉의 밭임-표지가 분명한 1곳을 끼쳐 줌. 끝.
재주이며 스스로 쓴 할아버지.

참 고 문 헌

- 김종훈(1983) '한국고유한자연구', 집문당
남풍현(1974) '13세기 노비문서의 이두', '단국대학교 논문집' 8집
민현구(1981) "토지제도", '韓國史論 2 고려', 국사편찬위원회
박병호(1974, 1983재판)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_____ (1985)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대출판부
안병희(1983) '吏讀文獻 吏文大師에 대하여', '동방학지' 38집
최승희(1981)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영국(1980)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 하: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